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광주과학기술원 김상호

1.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 인구 환경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

- 신생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에 26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1로 역대 최저 기록
- 평균 기대여명은 2060년에 90.1세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은 4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인부양률 급증 예상(통계청 홈페이지)

□ 경제 환경의 악화

-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의 혁신 활동과 투자 부진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30년대에 1.3%, 2040년대에 0.8%, 2050년대에 0.5%의 경제성장률 예측(기획재정부 2020, p.4)
o0%대의 경제성장률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대와 동일한 경제성장률
- 성장 둔화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이는 다시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를 통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 초래

□ 미래에 복지 지출 급증

- 국민연금제도의 늦은 도입(1988년)과 낮은 노인 인구 비중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현재 낮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보건 지출은 향후 급증하여 2060년부터 EU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표 1> 참조)
- 이의 주된 원인은 고령화와 성장 둔화

<표 1> 한국과 EU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과 공공보건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2019	2030	2040	2050	2060
한국	연금, 보건	12.2	5.3(7.1)	7.3(9.7)	9.3(12.2)	11.2(13.6)
독일	연금, 보건	10.3(9.0)	11.6(9.2)	12.0(9.5)	12.2(9.8)	12.5(9.7)
프랑스	연금, 보건	14.8(10.3)	15.8(11.1)	15.2(11.7)	14.3(12.0)	13.4(12.2)
덴마크	연금, 보건	9.3(10.2)	8.5(11.7)	8.1(12.9)	7.6(13.6)	7.2(14.2)
네덜란드	연금, 보건	6.8(9.4)	8.1(10.5)	9.1(11.7)	8.9(12.4)	8.9(12.7)
스웨덴	연금, 보건	7.6(10.5)	7.4(11.3)	7.0(11.9)	7.0(12.3)	7.4(13.0)
EU 평균	연금, 보건	11.6(8.3)	12.5(8.9)	12.8(9.5)	12.6(10.0)	12.1(10.2)

주: 1) 2019년은 실측치이며, 한국은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합계임.

2) 보건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합계임.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19), OECD Statistics 홈페이지 및 European Commission(2021)

2. 노후소득 조달방법에 따른 OECD 국가 분류

□ OECD 국가의 노후소득 수준

- 2016년 기준 전체 인구 평균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은 87.4%(OECD 2019, p.185)
 - 프랑스(103.2%), 이스라엘(101.2%) 및 룩셈부르크(105.3%)는 전체 평균을 상회
 - 그리스(96.8%), 이탈리아(99.6%), 포르투갈(99.0%) 및 스페인(95.3%) 같은 지중해 국가도 매우 높음
 - 전형적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는 미국(93.8%) 및 영국(83.8%)과 비교하여 전형적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85.5%)도 비슷한 수준임
 - 이는 선진국의 노후소득 수준이 복지제도 구축방법에 관계없이 비슷한 것을 보여줌(Esping-Andersen 외 2016, p.842)

□ 노후소득 조달방법에 기초한 OECD 국가 분류

- 자본소득(주로 민영연금) 비중에 기초해서 분류
 - 첫째, 자본소득(주로 민영연금) 비중이 평균(10.0%)보다 2배 이상 높은 국가 그룹으로 캐나다(42.4%), 뉴질랜드(26.8%), 덴마크(22.2%) 및 한국(22.5%)이 이에 해당
 - 이들 국가에서 공공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하인데, 이는 공적연금 역할이 미흡함을 의미
 - 이 그룹에서 특이하게 한국의 경우 근로소득이 41.3%를 차지하는 반면 공공이전소득은 25.0%에 불과한데, 이는 국민연금 도입이 늦고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

- 둘째, 이와 반대로 자본소득 비중이 평균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국가 그룹으로 라트비아(1.7%), 리투아니아(3.2%), 에스토니아(2.1%), 슬로바키아(0.7%), 폴란드(0.8%), 슬로베니아(4.0%), 체코(2.6%) 및 헝가리(1.3%)가 이에 해당
 - o이 그룹은 1991년 소련 붕괴 후 명령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국가로 공적연금을 칠레 모델에 따라 민영화
 - o기업연금에 의한 노후소득이 전혀 없고 공공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높은 공공이전지출이 이들 국가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 셋째, 자본소득 비중이 5-10% 수준으로 민영연금 역할이 제한적이면서 공적연금이 관대한 국가 그룹으로 그리스(5.0%), 포르투갈(5.8%), 이탈리아(5.9%) 및 스페인(8.3%)이 이에 해당
 - o관대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에서 주된 역할(70% 이상)을 하면서 노후소득이 전체 인구 평균소득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PIGS 국가
 - oGDP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2015년 기준 매우 높아(그리스 16.8%, 포르투갈 13.3%, 이탈리아 16.2% 및 스페인 11.1%)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2010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
- 넷째, 민영연금 역할이 5-10% 수준으로 제한적이고 국민소득 수준이 높으면서 노후소득을 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국가 그룹으로 독일(10.0%), 아일랜드(5.5%), 오스트리아(5.6%), 핀란드(8.5%), 룩셈부르크(9.1%) 및 벨기에(6.0%)가 이에 해당
 - o이들 국가에서는 자본시장 발전이 늦어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투자가 어려웠고, 최근에서야 사적연금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o프랑스는 이 그룹에 속한 여타 국가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소득 비중이 16.0%로 다소 높음
- 다섯째, 자본소득 비중이 10%를 초과하면서 공공이전소득 비중이 50% 이하인 그룹으로 미국, 영국 및 일본이 이에 해당하며, 경제 운영에 시장경제 특성이 강한 국가들
 - o미국과 영국에서는 노후소득 조달에서 개인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민영보험 상품을 구입하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잘 구축된 자본시장이 사적연금시장 발전에 기여
 - o일본과 미국에서는 근로소득이 노후소득에 중요

- 여섯째, 공적연금 민영화로 법정개인연금이 발달한 국가 그룹으로 칠레와 멕시코가 이에 해당하며, 공적연금 역할이 미흡하고 근로소득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음
 - o 칠레는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체제전환 국가의 모델이 되었음
 - o 멕시코는 공공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일곱째, 터키는 기업연금과 자본소득의 합(53.0%)이 가장 높은 반면 공공이전소득이 매우 낮은 점에서 특이한 경우
 - o 노인들은 주로 민영부문을 이용해 노후소득을 조달하고 공적연금 역할이 매우 미흡
- 여덟째, 법정 또는 준법정 기업연금을 적용하는 국가로 네덜란드,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에 해당
 - o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전통적으로 사회적 연대가 미덕으로 간주되지만 공적연금 역할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비스마르크형 복지국가보다 현저히 적은 대신 준법정 산별 기업연금을 적용
 - o 스위스에서는 2018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의 73.6%가 법정기업연금에 가입
- OECD 국가들은 자국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노후소득 보장에 공적연금이 주된 역할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공적연금의 역할을 점차 축소
- 공사연금이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충당

〈표 2〉 노후소득 조달방법에 따른 OECD 국가 분류

(단위: %)

	공공이전소득	기업연금	자본소득 (주로 민영연금)	근로소득
캐나다	35.1	0.0	42.4	22.5
뉴질랜드	41.7	0.0	26.8	31.5
덴마크	46.6	14.5	22.2	16.7
한국	25.0	0.0	22.5	52.5
라트비아	57.1	0.0	1.7	41.3
리투아니아	62.0	0.0	3.2	34.8
에스토니아	64.2	0.0	2.1	33.7
슬로바키아	67.1	0.0	0.7	32.1
폴란드	69.8	0.0	0.8	29.4
슬로베니아	74.8	0.0	4.0	21.3
체코	78.1	0.0	2.6	19.3
헝가리	78.7	0.0	1.3	19.9
그리스	75.8	0.0	5.0	19.1
포르투갈	77.4	0.0	5.8	16.8
이탈리아	75.1	0.0	5.9	19.0
스페인	71.4	0.0	8.3	20.3
독일	70.6	4.8	10.0	14.6
아일랜드	76.7	0.0	5.5	17.8
오스트리아	81.2	0.0	5.6	13.2
핀란드	81.8	0.0	8.5	9.7
룩셈부르크	82.6	0.0	9.1	8.3
벨기에	85.0	0.0	6.0	8.9
프랑스	78.1	0.0	16.0	6.0
미국	41.3	7.6	15.9	35.3
영국	42.6	28.6	11.3	17.5
일본	49.2	0.0	10.6	40.2
칠레	18.3	27.2	5.9	48.6
멕시코	6.1	27.1	11.1	55.8
터키	14.9	37.1	15.9	32.1
네덜란드	45.2	39.1	5.8	9.9
스웨덴	52.4	17.8	12.9	16.9
스위스	43.2	30.6	11.2	15.0
OECD 평균	57.1	8.3	10.0	24.6

주: 자본소득은 개인연금과 비연금저축에서의 소득을 포함함.

자료: OECD(2019, p.185) 표에 기초해 작성

3. 국민연금의 문제점

□ 주요 문제점

- 첫째, 보편성 문제로 넓은 적용(coverage)의 사각지대
 - o 2020년 12월 기준 18세에서 59세까지의 총인구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26.4%이며, 장기체납자가 103.5만 명이고(국민연금공단 2021a, p.21), 지역가입자 중 거의 절반이 납부예외자(국민연금공단 2021b,

p.25)

o적용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은 10년 가입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노후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보장성 문제로 소득대체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에 의존해 노후생활을 하기에 연금액이 부족하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퇴직연령(60세)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 단절 발생

o이는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

- 셋째, 2022년 4월 기준 적립금이 919.6조원에 달하지만 장기재정 위기에 처해 있음

o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에서 2042년 당기 수지적자 발생 후 2057년에 적립금이 고갈되며, 기금 고갈 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할 때의 필요보험료율은 24.6%이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보건복지부 2018, p.2)

o더욱이 추계에 설정한 인구전망과 거시경제 기초율이 악화되어 추계 시점이 늦을수록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짐

o이는 재원조달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을 의미

- 넷째, 2022년 평균소득의 신규가입자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최소 2.66 이상의 수익비를 기대할 수 있고(<표 2> 참조), 고소득자도 1.24 수준의 수익비 기대

o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순이전액(총연금액-총보험료) 기준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아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음(김상호 2019, p.95).

□ 균형보험료를 산정

- 국민연금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와 이자수입의 합계가 연금지출과 일치하는 수지상등의 원칙 준수 필요

o신규가입자의 수급 구조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

o2022년 25세에 가입해 40년 동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하는 남자를 대표가입자로 선정

o유족연금은 수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상이한 가입기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0년과 35년 가입한 경우를 추가로 분석

- 균형보험료율은 생애 연금액과 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는 가입기간별 소득이 주어졌을 때 수지상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율

o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 사용한 이자율과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남성 장래생명표에 기초해 연금수급 기간으로 26년을 설정

- 아래 연산식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40년 가입자의 균형보험료율은 24.0%이며,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소폭 상승(<표 2> 참조)

$$SSB = [(0.125n) - \sum_{j=0}^n 0.00125j](A_t + B_t)(0.05) \times 12$$

$$B_t = \frac{W_{t+z-65} \sum_{j=0}^{64-z} \{ \Pi_{i=0}^j (1 + g_{(t+z-65)+i}) [\Pi_{i=j}^{64-z} (1 + R_{(t+z-65)+i})] \}}{65 - z}$$

$$TSST = W_{t+z-65} \times 12 \sum_{j=0}^{64-z} [\Pi_{i=0}^j (1 + g_{(t+z-65)+i})] \theta_{(t+z-65)+j} (1+r)^{64-z-j}$$

단, SSB_t : t연도의 노령연금

A_t : t연도 이전 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_t : 가입기간의 가입자 월 소득 평균액

W_{t+z-65} : (t+z-65)연도의 가입자 월 소득

t : 연금수급 개시연도

z : 가입연령

g : 소득증가율

$R_{(t+z-65)+i}$: [(t+z-65)+i] 연도의 재평가율

n : 2009년부터 2027년까지 가입연수의 합

TSST: 은퇴연도 기준으로 현가화한 총보험료

$\theta_{(t+z-65)+j}$: [(t+z-65)+j] 연도의 보험료율

<표 2> 현행 국민연금의 수익비(2022년 현가 기준)

(단위: 천원)

가입기간	연금액 (A)	보험료 (B)	수익비 (A/B)	순이전액 (A-B)	균형 보험료율
30년 가입	278,222	101,355	2.75	176,867	24.7%
35년 가입	324,969	119,975	2.71	204,994	24.4%
40년 가입	370,088	139,049	2.66	231,039	24.0%

□ 소득수준별 및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 분석 결과 40년 가입한 저소득자(평균소득의 0.2배)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100%를 상회(<표 3> 참조)

※참고로 평균소득의 0.5배의 저소득자가 수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22.9%임(이는 2022년 A값(2,681,724원) 대비 기초연금액(307,500원)으로 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하면 82.5%로 산출되어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이와 달리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약 40%의 소득대체율을, 상위 소득자의 경우에는 30%의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적연금을 더 필요로 하는 그룹은 중위소득과 상위소득 집단

〈표 3〉 국민연금의 소득수준별 및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단위: %)

	30년 가입	35년 가입	40년 가입
평균소득의 0.2배	89.3	104.1	118.8
평균소득의 0.5배	44.8	52.2	59.6
평균소득의 0.75배	34.9	40.7	46.5
평균소득	30.0	35.0	39.9
평균소득의 1.25배	27.0	31.5	35.9
평균소득의 1.5배	25.0	29.2	33.3
평균소득의 2배	22.5	26.3	30.0

4. 공적연금 개혁의 세계적 추세

- 1950년대 이후의 경제 호황에 힘입어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공적연금이 발전

○공적연금 덕분에 근로자는 은퇴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이를 사회의 성취로 인정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발생한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도전에 대응해 각국은 공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

-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 축소,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연령 인상 같은 모수개혁을 실시한 국가도 있고, 근본개혁을 통해 NDC제도로 전환한 국가도 있음.
- 공적연금 개혁의 세계적 추세는 노후소득 확보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의 역할을 높이는 것임.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 수준을 낮추고 있음.

□ 독일의 연금 개혁

- 비스마르크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독일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GRV)을 통해 '생활수준 유지' 목표를 추구했지만 1990년대 후반에 경기침체로 재정위기에 직면하자 '연금법 개혁 2001'을 실시
 - 국민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체계로, 급여 수준보다 재정 안정을 우선시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
 - o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대신 민영연금 가입 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공적연금을 보충토록 함
 - 또한 독일 제도에 맞게 2001년 NDC의 핵심 요소를 도입해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상황이 변하면 연금이 자동조정 되도록 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
 - o취업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급여산식에 지속가능성 요소 (sustainability factor)를 도입해 정치적 개입의 필요성을 줄임
- ※참고로 일본도 2001년 지속가능성 요소(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고, 이 규정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에 연금액이 각각 0.1%와 0.4% 감액되었음
- 또한 미래에 적용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상한선(최고보험료율)을 도입하여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제거

□ 스웨덴,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및 폴란드의 연금 개혁

- 스웨덴은 경제위기로 복지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최저보장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공적연금을 1998년에 명목확정기여방식(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

- NDC에서는 납부한 보험료를 가입자 평균임금 상승률로 재평가(revaluation)해서 개인계정에 기입해 주고, 개인계정에 있는 명목상의 적립금을 은퇴 시점의 개인별 기대여명을 반영해서 연금으로 환산(annuitization)하고, 연금 수급 개시 후에는 인플레이션율과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indexation)
-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한 결과 정치적 개입의 필요성 감소
-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및 폴란드도 스웨덴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형태의 NDC제도를 도입

5.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역할의 조정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에도 38.9%로 여타 국민의 빈곤율보다 월등히 높음.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낮은 도입뿐만 아니라 적용범위와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부족한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을 근로소득에 의존
- 시간이 경과하여 국민연금이 정착하여도 적용범위와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장기재정 재정불안정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
- 결국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이 이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함
 - o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분석은 중상위소득 계층에 사적연금이 더 필요한 것을 보여줌
- OECD 국가에 대한 분석에서도 공적연금의 역할은 축소되고 사적연금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 우리의 과제는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을 어떻게 확대해야 부족한 노후소득을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 가입자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2020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국민연금연구원, 2021a, 2021.11.
- 국민연금공단, 『2020년 제33호 국민연금 통계연보』, 2021b, 2021.7.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60년 국가채무비율 60%대 수준으로 관리」, 보도자료, 2020.9.2.
- 김상호, 「국민연금 재정불균형과 개혁(안)의 소득재분배 효과: 대표가입자 분석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9, pp.79-104.
-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18.
- 사회보장위원회,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9.7.4. 심의안건.
- Esping-Andersen, Gosta and Myles, John (2006), Sustainable and Equitable Retirement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The Oxford Handbook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eds. Gordon L. Clark, Alicia H. Munnell and J. Michael Orszag, pp.839-857,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The 2021 Ag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Institutional Paper 148, May 2021.
- OECD (2019), Pension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6d3dcfc-en>.

연금개혁과 퇴직연금의 역할

목차

- I. 고령화와 연금개혁 배경
- II.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연금개혁 방향
- III. 퇴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IV.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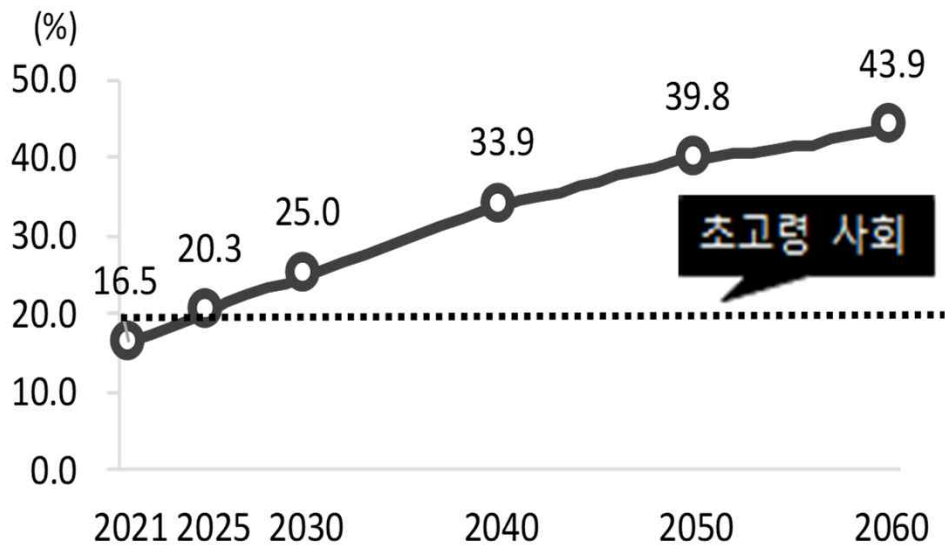
I. 고령화와 연금개혁 배경

1. 고령사회 도래와 원인
2. 복지재정 및 연금재정 악화
3. 노인빈곤과 노후자산 활용

1. 고령사회 도래와 원인

- (고령사회)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노인인구비중(고령화율)이 14% 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함
 - 고령화율은 '25년 20.3% (초고령사회) → '40년 33.9% → '60년 43.9%
 -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여(향후 연평균 30만 명 급감) 생산여력 둔화가 우려
- (원인) 2020년 기준 **기대여명**은 83.5세(65세 기준 21.5세), **합계출산율** 0.84명
 - 지난 30년 동안(1990~2020) 기대여명 11.8세(65세 기준 6.6세) 증가, 합계출산율 Δ 0.7명 감소

고령화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A)

기대여명 및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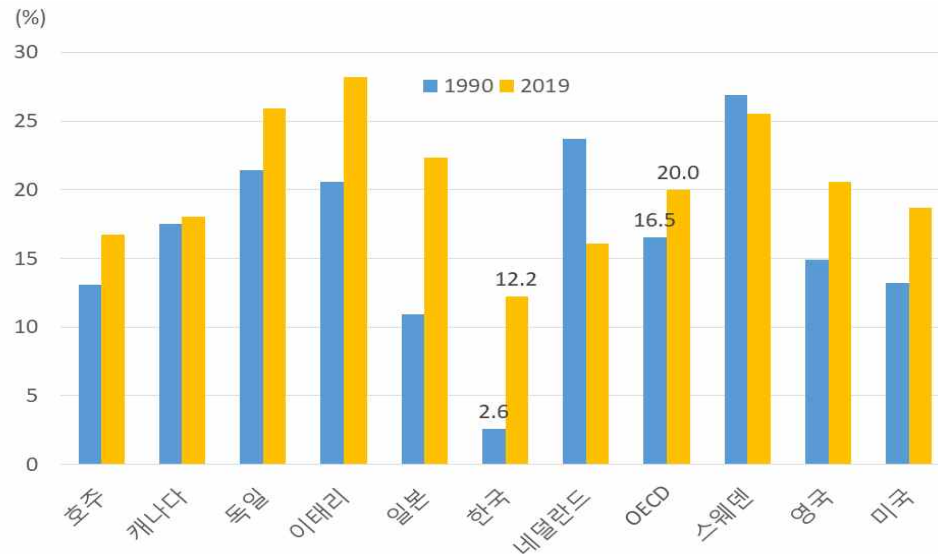
연도	기대여명 (세)				합계 출산율(명) 2)
	0세 (기대수 명)	65세	70세	80세	
1990	71.7	14.9	11.7	6.8	1.57
2000	76.0	16.4	12.9	7.3	1.48
2010	80.2	19.1	15.2	8.6	1.23
2020 ¹⁾	83.5	21.5	17.3	9.8	0.84
	(11.8)	(6.6)	(5.6)	(3.0)	(Δ 0.7)

1) 2020년 기준, 2019년 대비 1인당 기대수명이 1.3세 증가함
2) 기대여명 1인이 생애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임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년도; 통계청 KOSIS/완전생명표(1세 별); 통계청(2021b)

2. 복지재정 및 연금재정 악화

- 노인빈곤과 복지욕구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 확대**되었고, **복지재정은 급속히 팽창**함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 1990년 2.6% → 2019년 12.2% (OECD는 16.5% → 20.0%)
-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총당부채까지 고려하면 **향후 연금재정 부담**으로 인한 국가채무는 심각
- * 2021년 국가부채(2,196조 원) 중 공무원/군인연금의 총당부채(1,138조 원)의 비중은 51.8% 수준 (기획재정부, 2022)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 변화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2022)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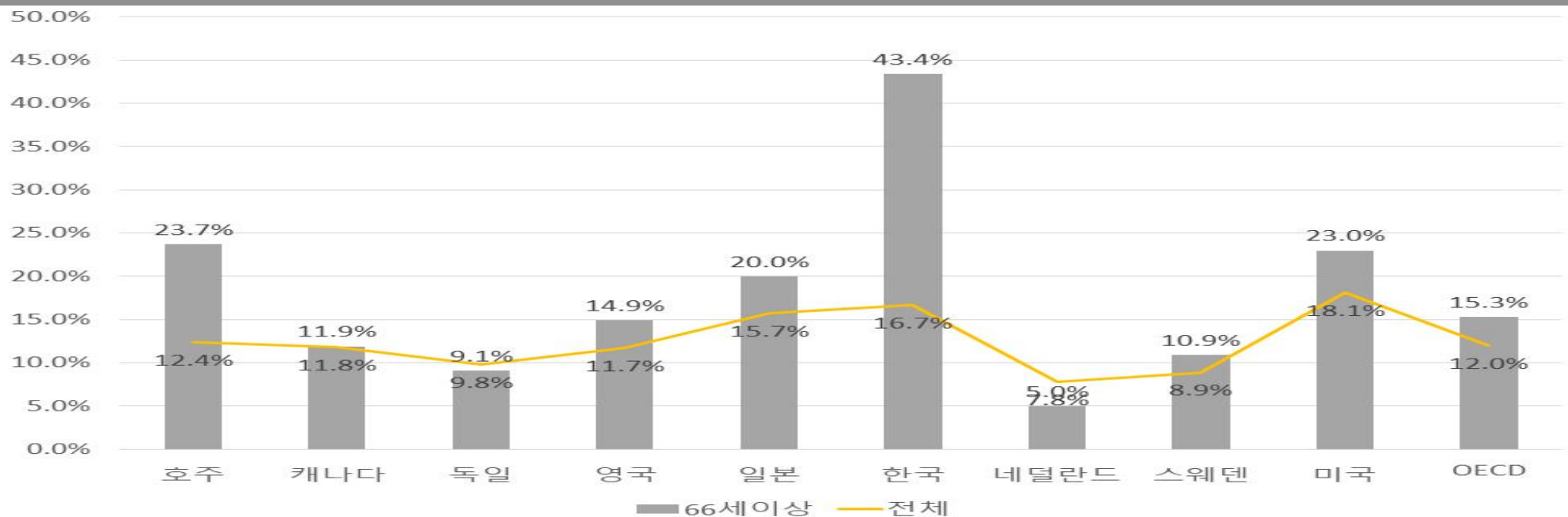


자료: 한국재정정보원(2022)

3. 노인빈곤과 노후자산 활용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나, 재정부담 문제로 인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선진국 노인빈곤율은 감소하여 전체빈곤율 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나(독일, 네덜란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 (OECD 15.3%, 2018년)로 가장 높음
- 이에 노인빈곤율, 공적연금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타 노후자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 (2018년)



주: OECD는 36개국의 평균임
 자료: OECD(2021)

II.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연금개혁 방향

1. 노후소득보장체계
2. 공적연금 평가
3. 연금개혁 방향

1. 노후소득보장체계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되며, 공적연금에 비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미한 편임
 -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됨
 - 공적연금 외 노후소득원으로 **퇴직·개인연금**, **역모기지** 등이 있음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보험료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역모기지(주택·농지연금)		
		2층	퇴직연금	IRP(2017~)	
조세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0층	기초연금		
소득원	대상		근로자	자영자 등	공무원 등 직역가입자

2. 공적연금 평가

• 사각지대의 범위가 넓고 수급률과 급여수준이 낮음

-(사각지대) 경찰인구 대비 납부자 비율은 '17년 65.6% (1,821만 명/2,775만 명), OECD 83.6%.

* 미국 90.4%, 영국 88.7% (S2P), 일본 97% (국민연금) 등

-(수급률/수급액) 국민연금 수급률(65세 이상)은 '20년 38.3% 이고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급여수준은 높지 않음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56만 원 (소득대체율 20.9%, 2021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가입률 국제비교

미국	영국	독일
90.4% (`14)	88.7% (S2P, `12)	100.0(총가입자) 68.3%(능동가입 자) (`14)
일본	스웨덴	한국
97%(국민), 51.0%(후생) (`10)	99.0% (`08)	65.6% (`17)

국민연금의 수급률 및 급여수준

- 65세이상 수급률은 '20년 38.3%, '30년 48.0%, '50년 7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법정 소득대체율 감소 : 70%→60%→40%(2028)
 -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더 낮음
- 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 노령연금수급자 평균연금액의 A값 대비 소득대체율은 약 20.9% 수준(A값 268만 원, 평균수급액 56만 원)

개혁방향

- 저부담, 고급여(수지불균형)
- 저출산, 고령화

- 보험료율 인상
- 급여수준 유지(기초연금 강화)

구분	한국	OECD 38
보험료율	9.0%	18.2%
급여수준	40%	42.2%
배율	4.4 배	2.3배

자료: OECD(2021), Pensions at a Glance. . p.141, p.197

2. 공적연금 평가

- 연금개혁 늦을수록 국민연금 **재정불안정 확대**되고, 기초연금 확대는 **새로운 재정문제**를 초래할 우려
 - 2007년 개혁으로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소진시점 연장, 추가 개혁 없어 소진시점은 당겨짐 ('60년 → '57년 → '54년)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현 노인층의 빈곤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기초연금 급여인상은 새로운 재정부담 우려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추계시점 (A)	적립금 소진시점 (B)	적립금 보유기간 (B-A)
2003년(제1차)	'47년(△96조 원)	44년
2008년(제2차)	'60년(△214조 원)	52년
2013년(제3차)	'60년(△281조 원)	47년
2018년(제4차)	'57년(△214조 원)	39년
2019년(예산처)	'54년(△164조 원)	35년

자료: 제1차~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함

연도별 기초연금 지급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급액(조 원)	4.3	6.9	10.0	10.3
증가율	-	61.3%	45.1%	2.8%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급액(조 원)	10.5	11.8	14.7	16.8
증가율	2.5%	12.1%	24.5%	1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기초연금지출현황

3. 연금개혁 방향: 공사연금 역할 분담

- 재정문제, 사회경제적 환경, 세계화 추세를 고려 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 한계**

➔ 적정노후소득 수준 달성을 위해 공사역할 분담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

-적정소득대체율 70% 가정 시 국민연금 30~35% (기초연금 10% 포함)로 예상되어 추가적 노후재원 확보 필요

-노후소득보장 강화 위해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활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선진국 연금개혁 정책을 고려하면 **사적연금 활성화(특히, 퇴직연금)**가 우선시 될 필요 있음

연금개혁 방향: 공사연금 역할 분담

구분	공적연금	사적연금(퇴직연금)
목표	제도 내실화, 재정안정 노력	적정노후소득보장, 맞춤형 소득보장
역할 분담	법정소득대체율 40% 실현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	목표소득대체율(70%) 실현 지원 소득계층별 적정 소득보장
주요 대상	중산층 이하	중산층 이상(소득활동 저소득층 확대)

<참고> 고령화 단계별 연금정책 방향

고령화 단계별 연금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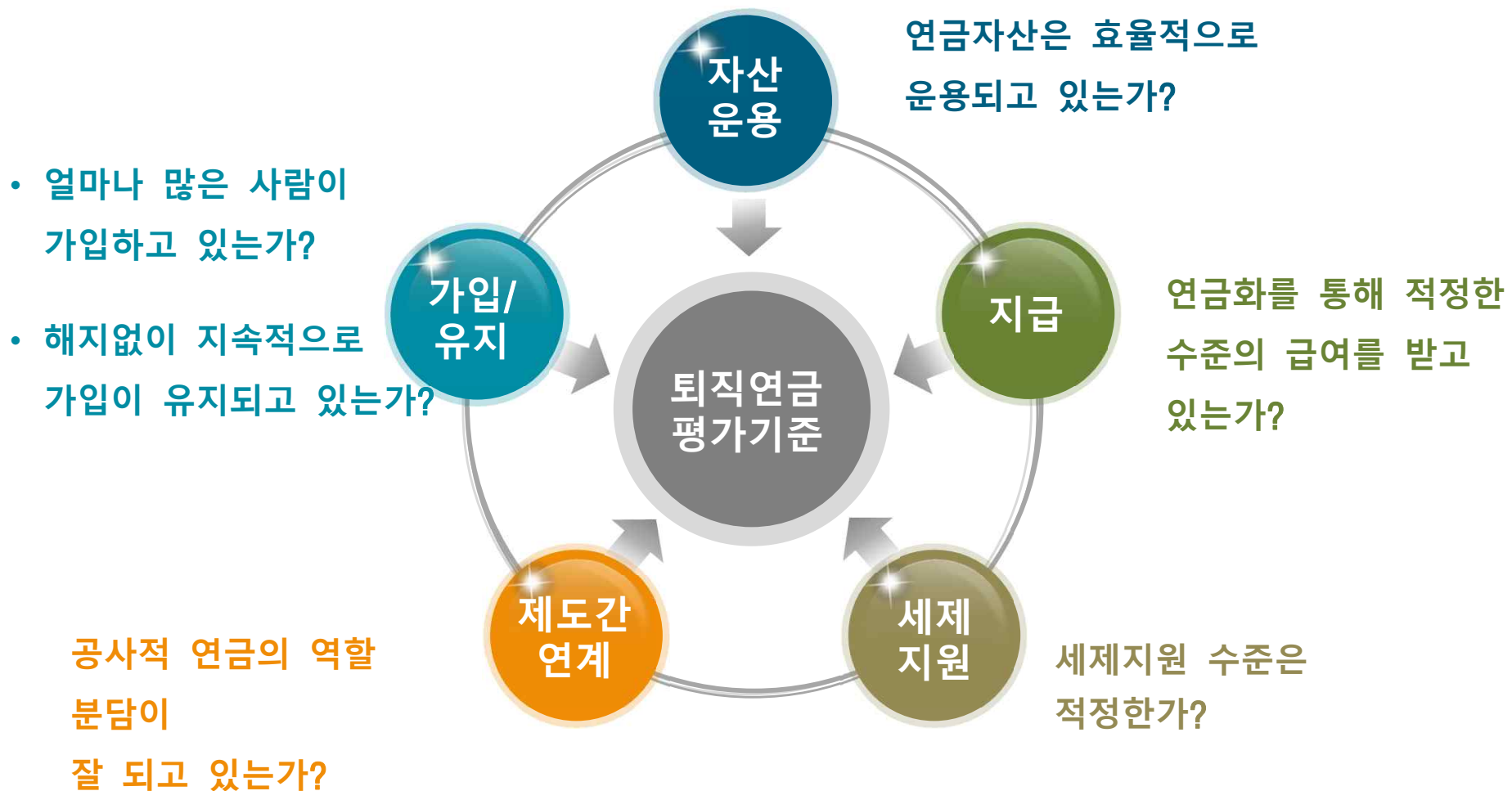
구분	시기	특징
고령화사회 (고령화율 7%~14%)	2차 세계대전~1970년대 (우리나라: '00~'16)	-공적연금 중심 노후소득 보장 팽창기 · 공적연금 적용대상 확대(자영자 포함한 전국민) · 기초연금도입 등 연금수급대상 확대 · 연금급여와 보험료 동시 인상
고령사회 (고령화율 14%~20%)	1970년대~현재 (우리나라: '17~) *1970년대 오일쇼크 등	-공적연금 급여완화 및 사적연금 활성화 등 조정기 · 세계 경기침체와 급속한 고령화로 1980년대 공적연금 재정문제가 심화 · 공적연금의 민영화, 사적연금 활성화(보조금, 세제혜택 등) · 연금수령시기 연장, 연금급여 축소, 보험료 인상, 자동조절장치 도입 등
초고령사회 (고령화율 20% 초과)	현재 2개 국가 해당 일본('06~), 독일('10~)	-고령사회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유지하되,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여 선별적 노후소득보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III. 퇴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도입률/가입률, 유지율 낮음
2. 낮은 수익률, 자산운용 여건 취약
3. 낮은 연금화 및 저소득보장
4. 낮은 세제지원, 세제차등화 미흡
5. 공사연금제도 간 연계성 부족

퇴직연금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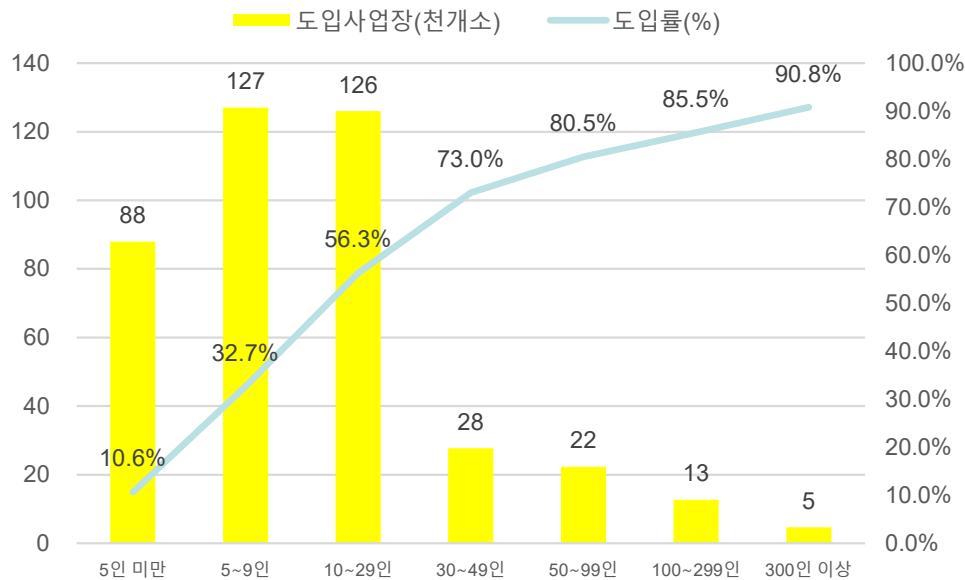
- 퇴직연금의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



1-1. (가입·유지) 도입률 및 가입률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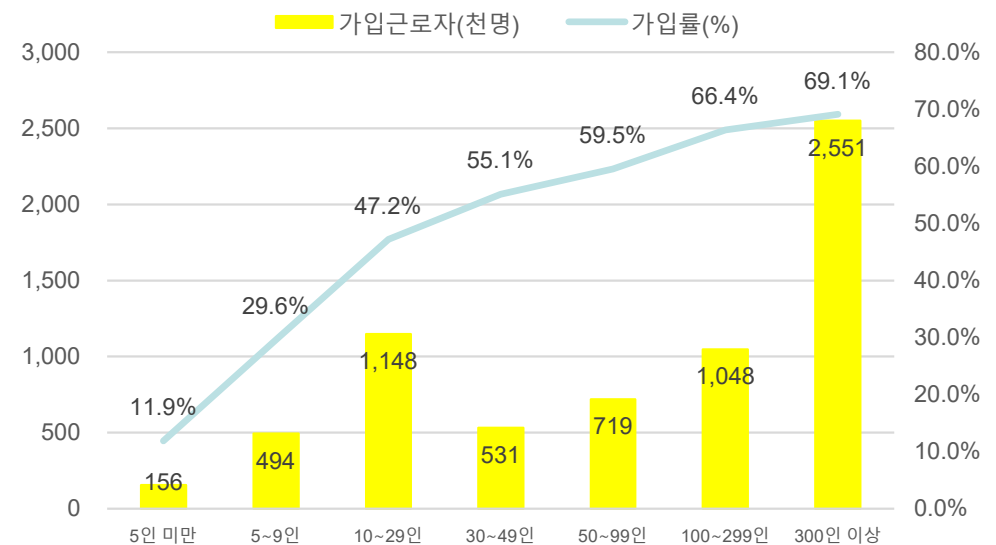
- 퇴직연금 **도입률과 가입률은 낮은 편**이며, 특히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일수록** 도입률, 가입률이 낮음
 - 도입률 ('20년)은 27.2% (5인미만 10.6% , 10~30인미만 56.3% , 300인 이상 90.8%)
 - 가입률 ('20년)은 52.4% (5인미만 11.9% , 10~30인미만 47.2% , 300인 이상 69.1%)
- 퇴직급여 미설정시 퇴직금 설정으로 간주하므로 퇴직연금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함(퇴직급여법 제11조)

사업장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2020년, 천개)



자료 : 통계청(2021), 2020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

사업장규모별 퇴직연금 가입 현황 (2020년, 천명)



자료 : 통계청(2021), 2020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

1-2. (가입·유지) 해지 등으로 유지율 낮음

- 근로자의 이직이 잦고 IRP 계좌로 **이관 후**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해지**되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 평균근속기간 6.7년(2019년)을 고려하면 생애근로기간 동안 4~5회의 이직이 예상됨
 - 이직 시 IRP 계좌로 이관한 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이관성이 취약함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관 및 해지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IRP 이관			IRP 해지			
	인원(명)	금액(억 원)		인원(명)		금액(억 원)	
'15년	784,530	106,649	<1,359>	717,155	(91.4)	94,699	<1,320>
'16년	788,389	106,801	<1,355>	739,807	(93.8)	105,762	<1,430>
'17년	779,187	114,529	<1,470>	749,625	(96.2)	100,726	<1,344>
'18년	836,944	124,825	<1,491>	845,943	(101.1)	108,470	<1,282>
'19년	844,123	138,982	<1,646>	864,801	(102.5)	112,463	<1,300>
'20년	858,203	151,670	<1,767>	842,821	(98.2)	110,521	<1,311>
합산*	4,891,376	743,456	<1,520>	4,760,152	(97.3)	632,641	<1,329>

주: 1) < >안은 1인당 이관 및 해지금액임(단위: 만 원)

2) ()안은 이관인원 대비 해지인원 비율로 해지율임(단위: %)

3) *은 '15년~'20년까지의 합산한 수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8); 통계청(2019); 통계청(2021c); 강성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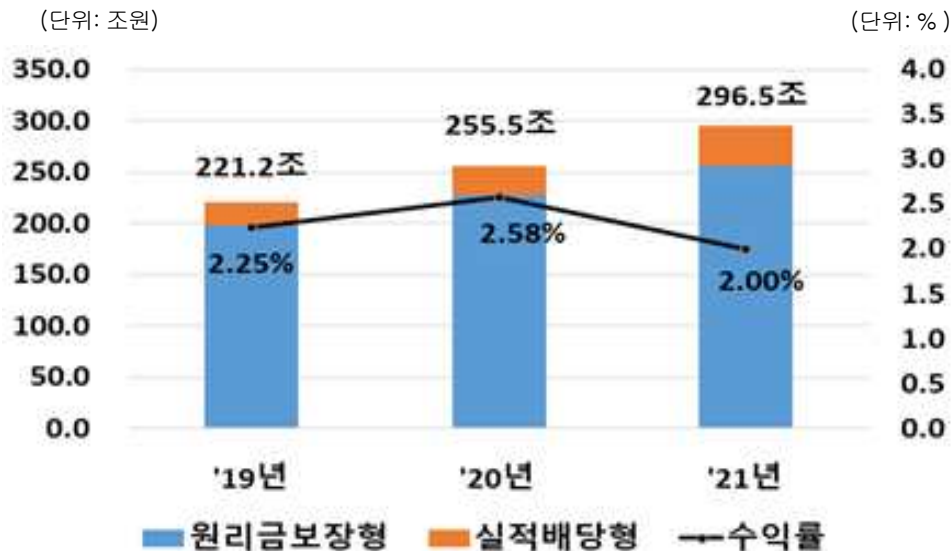
2. (자산운용) 낮은 수익률, 자산운용 여건 취약

- 안전자산 선호로 수익이 낮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음

–원리금보장형 운용비중은 감소추세이나 2020년 적립금의 89.3% (대기성 자금 포함)는 원리금 방식으로 운용됨

–2021년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2.0% 이며, 주식시장 변화 등 금융환경에 매우 민감함
(’19년 2.25% → ’20년 2.58% → ’21년 2.00%)

최근 3년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수익률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2. 4. 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통계

공사적 연금 수익률 비교

구분	퇴직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0년	5.03	10.37	8.24	10.77
'12년	4.65	6.99	3.06	6.62
'14년	3.04	5.25	3.35	2.63
'16년	1.58	4.69	3.72	3.91
'18년	1.01	-0.92	-1.70	-2.45
단순평균	3.02	4.96	3.58	4.46
'16~'18년 3년평균	1.49	3.68	3.02	3.55

자료: OECD(2014)

3. (지급) 낮은 연금화 및 저소득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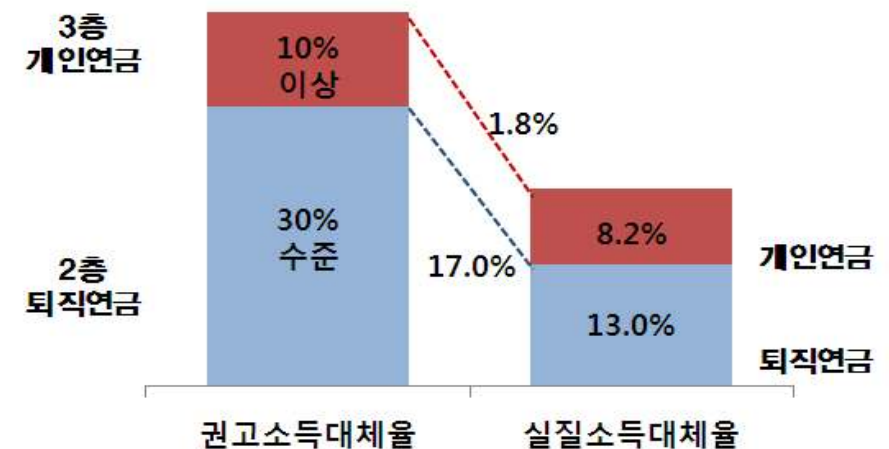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되고 있음
 - 2021년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 수령 비율은 4.3%
 - 적립금이 적을 수록 일시금을 수령함 (일시금 1천 6백만원, 연금 1억 9천만원)
- 우리나라 사적연금은 연금화 전환이 미흡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
 - 퇴직연금을 **충실히 가입(가입기간 30년)**하는 것을 가정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0%**로 추정
 - 해지, 실업, 조기퇴직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실현소득대체율은 이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

퇴직연금의 수급형태별 수급 현황(2021년)

(단위: 좌, 억 원, %)

내용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전체
계좌 수(A)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0)
금액(B)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0)
계좌당 금액(B/A)	1.89	0.16	0.2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자료: 금융감독원(2022),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통계

주: 사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 개인/퇴직연금수익률은 협회홈페이지 참조
자료: 류건식(2013)

4. (세제지원) 낮은 세제지원, 세제차등화 미흡

- **세액공제 전환** 이후 연금세제(IRP, 연금저축) **지원수준이 더욱 감소**하여 IRP 가입유인이 낮음
 - 연금세제 지원수준은 DB, DC형 각각 납부액 대비 17%, 14% (OECD 26%, OECD 2016)
- 가입자의 특성(면세자, 주부, 퇴직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과세체계 (소득기준만 적용)**
 - 두 단계의 세액공제율 (12%, 15%), 면세자에 대한 세제혜택 없어 연금저축 가입유인 떨어짐
 - 퇴직직전세대(50세 이상)에 대한 추가연금세제를 2022년까지만 적용 (미국, 호주: Catch-up Policy)
- 연금화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이 미흡하여 **연금수령 유인이 낮음**
 - 퇴직소득공제율: 50.3% → 과세율: 일시금 수령시 4.4% vs. 연금 수령시 1.2% 추정(보험연구원(2017))

IRP 및 연금계좌 세제혜택

납부시

납부액 한도 : 연간 900만 원 (연금저축 납부액 포함)
 * 700만원 → 900만원 상향 (50세 이상 추가 200만원 삭제)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1억원 한도)에 대해 IRP 추가납입 허용
 세액공제율 :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보험료 전액 손비인정('16년 이후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 폐지)

운용/수령시

(운용 시)운용수익에 대해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
 (수령 시)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3~5%
 * 연금소득 요건: 5년 이상 불입, 55세 이후 인출, 10년 이상 분할 인출
 (수령 시)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종합과세 혹은 15% 분리과세

- 세제지원형 사적연금 도입

- * 독일: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 * 스웨덴: 프리미엄연금

- 사적연금 가입의무화

- * 영국의 NEST 연금제도 등

IV.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1. 퇴직연금 일원화/연속성 강화
2. 자산운용 여건 개선 및 제도 인식 개선
3. 자동연금수급
4. 세제지원 강화
5. 공사 연금제도 간 연계성 제고

1. 퇴직연금 일원화/연속성 강화

- **퇴직연금 일원화** 및 가입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
 -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 (신규사업장에 우선 적용 등 단계적 접근)
 - 영세사업장에 대해 운영경비 지원 등을 통해 제도 수용성 제고
- **이직 후 계좌 해지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
 - 정년시점(55세 → 60세)까지 연금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강제
 - 긴급자금 필요 시 퇴직급여 담보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조치

퇴직연금 일원화

- 퇴직금제 폐지 및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신규사업장에 우선 적용 등)
-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 가입 확대 내실화 제고
 - 퇴직연금 조기 도입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제도연속성 강화

- 정년시점(55세 → 60세)까지 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강제
 - 이직 시 IRP계좌로 이전된 후 인출 가능하지 않도록 제도 변경
- 긴급자금 필요 시 퇴직급여 담보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조치

2. 자산운용 여건 개선 및 제도 인식 제고

- 자산운용시스템의 효율화 등 **자산운용 여건 개선 및 수급권 보호 강화**
 - 고수익 투자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시스템 개선
 - 자산운용시스템 효율화, 수급권보호를 위해 OECD 기준에 준하는 감시기능체계의 개선
- 제도 및 투자교육 강화를 통한 **제도 인식 제고** 등
 - 퇴직연금 제도 교육을 통한 가입자 인식 제고
 - 수익률 제고 및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자·소비자 대상 투자교육 강화

운용 시스템 개선/ 수급권보호

- 적극적 투자에 상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시스템 효율화 필요
-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 부여 등을 통한 수탁자 감시기능 상시화
 - 2022년 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등 적극적 투자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투자 손실에 따른 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효율화 필요

투자교육 강화

-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 및 투자교육 관련 현행 규정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조치
-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투자교육 의무화 및 가입자 교육 강화
 - 은퇴교육을 포함한 종합적 가입자 교육으로 전환

3. 자동연금수급

- 정년시점에 맞춰 연금 수령이 될 수 있도록 **수령연령 조정**
 - 정년의무화 연령(60세)을 고려하여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수령연령을 상향 조정
- **자동연금수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화 유도
 -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제도화 (일본: 일시금지급숙려제도)

수령연령 조정

- 정년시점에 맞춰 연금 수령이 될 수 있도록 수령연령 조정
 - 정년의무화 연령(60세)을 고려하여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수령연령을 상향 조정

자동 연금수급

- 수급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제도화
 - 일본의 일시금지급 숙려제도를 참고하여 연금수급 후 일정기간(예, 5년)이 지난 후에 긴급자금 필요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Opt-out 허용)

4. 세제지원 강화

• 세제혜택 확대 및 차등화로 가입 유도, 연금화 유인을 위한 세제정책 추진

- OECD국가의 퇴직연금 세제지원비율을 고려하여 세제지원 수준 상향
- 세액공제대상소득 상향조정, 가입자 특성별 세제혜택 차등화,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강화

가입 유도

- OECD국가의 퇴직연금 세제지원비율을 고려하여 세제지원 수준 상향
- 가입자 특성별(면세자, 주부, 퇴직자, 연령, 소득수준 등) 세제혜택 차등화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독일: 리스터연금),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50세 이상 퇴직직전세대대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상시화 (미국, 호주 : Catch-up Plan)
 - 퇴직연금 도입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운영경비 등에 대해 대출금리 지원

연금화 유도

-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이를 연금화 전환 재원으로 활용
 -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들은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고 연금 수령을 의무화

5. 공사 연금제도 간 연계성 제고

• 공사연금 역할분담과 공사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조직 구성

- 목표소득대체율(예, 70%)을 논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연금 역할 분담 방안 강구
- 공사연금 제도 간 연계와 이를 관리 감독할 컨트롤타워(예, 대통령 직속 전담조직) 구성 필요

공사 역할 분담 명확

- 노후소득보장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평균소득자 혹은 중위소득자 기준 목표소득대체율 수준 설정
-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 수준을 보다 구체화
 -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 목표소득대체율을 30~35% (혹은 40%)로 설정할 경우,
 - 사적연금은 35~40% (혹은 퇴직연금 20%)를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소득대체율 70% 달성

컨트롤타워 구성

- 부처 간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
 - (현행체계) 부처별로 나누어 관리 (복지부: 국민연금, 노동부: 퇴직연금, 금융위: 개인연금)
 - (개선방향) 대통령 직속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

감사합니다

기대수명과 개인연금

건국대학교
양혜경

연구문제

- Based on “*What Explains the Gender Gap in Private Pensions in Korea?*” by Hae Kyung Yang, Frances Woolley, and Sharon Tennyson.
- Main questions:
 - 주관적 기대수명이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 주관적 기대수명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주관적 기대수명이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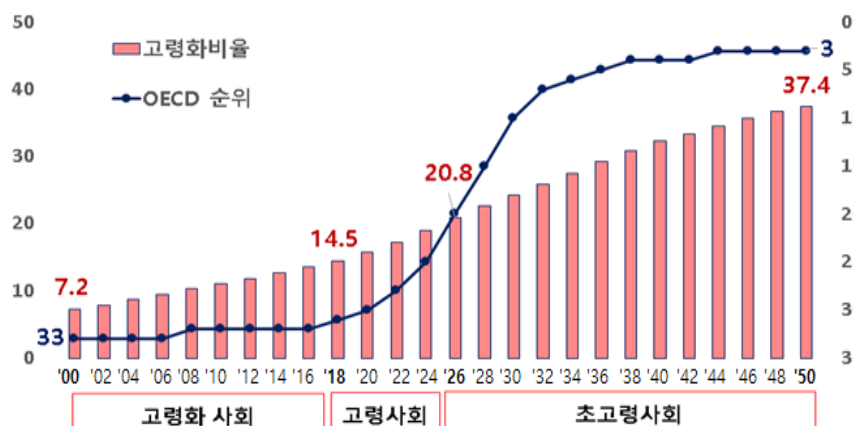
Agenda

- 연구의 배경
- 선행연구 고찰
- 분석모형
- 실증분석 자료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 분석 결과 및 논의

3

(여성)의 노후준비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
 - 노인인구비중 15.7%(2020), 20.3%(2025), 43.9(2060)으로 증가 예측
 - 기대수명(2020): 남성 80.5세, 여성 86.5세
 - 1970년 62.3세에서 2020년 83.5세로 21년 증가
- 노인 빈곤율:
 - 노인 인구의 40% 이상 빈곤층
 - 노인 인구의 2/3는 여성 (통계청, 2005)
 - 고령자 1인 가구 여성 비중 71.9%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21

4

(여성)의 노후준비 필요성 (계속)

-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
 - 공적 수혜금 31%, 공적 연금 30%, 가족의 수입, 자녀·친지등의 용돈 25%, 개인 저축액·사적연금 4%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 성별 격차(석재은·임정기, 2007):
 - 남성노인의 소득원은 공적연금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음
 - 여성노인의 경우 공공부조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음

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Year	부모 스스로	가족	가족, 정부, 사회	가족, 사회	기타	Total
2006	13.7	67.3	14.9	4.0	0.1	100
2008	16.5	48.1	29.9	5.5	0.0	100
2010	18.4	38.3	37.8	5.5	0.1	100
2012	22.3	36.6	34.6	6.4	0.1	100
2014	23.8	34.1	35.7	6.4	-	100

가족 중 부모 부양자 (%)

Source: 고령자통계 (통계청)

Year	장남(만며느리)	아들(며느리)	딸(사회)	모든 자녀	자식 중 능력 있는 자	Total
2006	40.2	11.3	0.6	29.0	18.9	100
2008	33.1	8.3	1.0	41.9	15.7	100
2010	28.2	8.6	1.0	47.8	14.3	100
2012	16.7	5.5	0.6	60.8	16.4	100
2014	14.2	5.0	0.7	62.4	17.8	100

6

(여성)의 노후준비 필요성 (계속)

- 공사연금체계: 공적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구조
 - 2020년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31.2% (OECD 평균 51.8%)
 - 공적연금+퇴직연금 소득대체율 40% (OECD 권고율 70%)
 - 개인연금 보유 비중 낮음: 경제활동 인구의 20% 보유(2020)
-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 전환 트렌드:
 -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커지는 추세
 - 다양한 연금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가?
- 공급측면에서의 문제:
 - 세제혜택이 충분한 가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개인연금 현황

- 공적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
 - 2020년 현재 가입율은 경제활동인구의 20% 정도
 - 소득이 낮을수록 가입율이 낮음
 - 대부분 소규모 계약(연금저축의 80.5%가 연간 400만원 이하로 납입, 계약당 수령액 연간 295만원, 연간 수령액 500만원 이하 82.5%)
 - 종신행(36.4%)보다 확정기간형 수령 선호:
 - 적립금 기준 보험 69.9%, 펀드 15.2%, 신탁 10.6% 점유

주관적 기대수명과 장수기대

- 주관적 기대수명:
 - 개인연금 가입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
 - 연금 가입 의사결정은 객관적 기대수명이 아닌 주관적 기대수명에 근거(O'Dea & Sturrock, 2021)
- 장수기대:
 - Survival optimism: subjective life expectancy > objective life expectancy
 - Survival pessimism: subjective life expectancy < objective life expectancy

Longevity Expectations and Economic Behaviors

- 연금 퍼즐 (Brown, 2001; Finkelstein and Poterba, 2004; Benartzi et al., 2011; Inkmann et al., 2011; Teppa and Lafourcade, 2013; O'Dea and Sturrock, 2021 등)
- Savings (De Nardi et al., 2009; Cocco and Gomes, 2012; Post and Hanewald, 2013; Wu et al., 2015; Heimer et al., 2019 등)
- Asset allocation and retirement timing (Menoncin, 2009; Stevens, 2009; Horneff et al., 2010; Schulze and Post, 2010 등)
- Portfolio choice (Spaenjers and Spira, 2015)

주관적 기대수명과 개인연금: 국내연구

- 예상 은퇴기간, 주관적 기대수명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 (송윤아, 2009; 주소현, 2011; 이찬희·정홍주, 2013; 이경희·전병욱, 2020; 손지훈 외, 2021 등)
- 노후리스크 인식은 고소득층에서만 유의 (심해린·전병욱, 2020)
- 남성의 경우에서만 장수 기대가 유의(역선택) (이창선, 2020)
 - 여성의 경우 장수 기대와 개인연금 가입 간의 관련이 나타나지 않음

11

연구목적 및 분석모형

- 1) 기대수명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은 어떠한가?
- 2) 주관적 기대수명이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Private\ pension_{it} = \beta_0 + \beta_1 SL_{it} + \beta_2 X'_{it} + u_{it}$$

$$Private\ pension_{it} = \alpha_0 + \alpha_1 E_{it} + \alpha_2 X'_{it} + u_{it}$$

Private pension: 개인연금 보유 여부

SL: 주관적 기대수명

E: 장수기대 = 주관적 기대수명 - 객관적 기대수명

X': 연령, 교육수준, 자녀 수, 근로형태, 가계소득, 자가보유 여부, 순자산, 거주 지역 등 개인 및 가계 특성

12

Data

- 재정패널(NaSTaB) 9차 - 13차 (2016-2020):
 -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 다수 포함됨
 - 가구조사 + 가구원 조사 병합
 - 가구원 조사는 소득이 있는 가구원에 한해 조사됨
 - 주관적 기대수명은 가구원 조사에 설문됨
- 분석 표본:
 - 30세 이상 (개인연금 모형: 30-60세)
 - 개인연금 수급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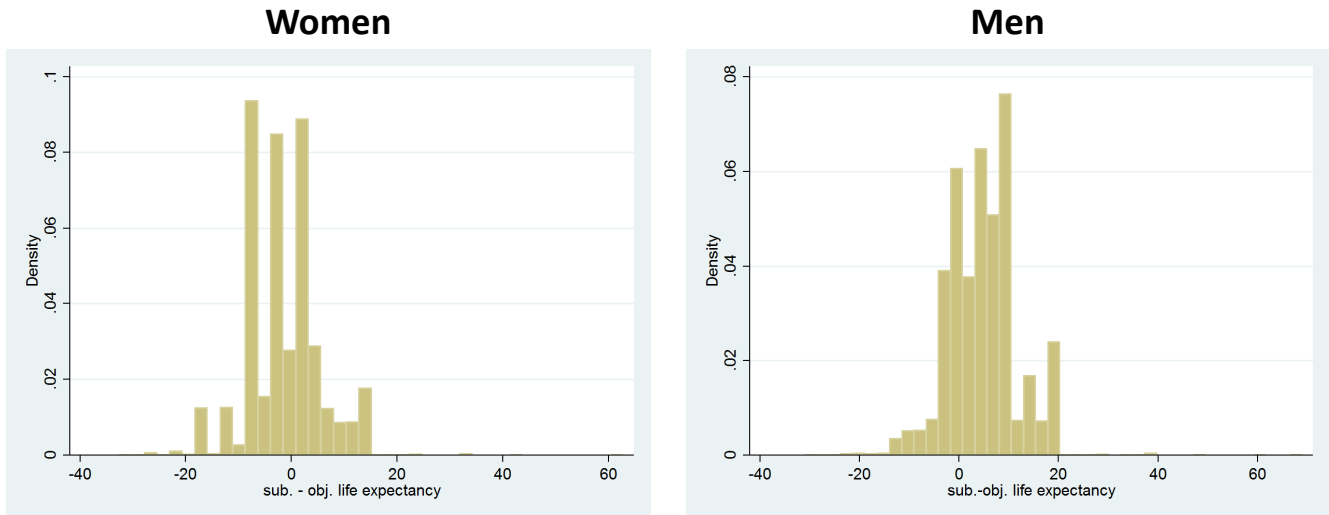
13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주관적 기대수명:
 - “귀하가 생각하는 본인의 예상 수명은 몇 세입니까?”
- 객관적 기대수명:
 - $\text{연령}_{it} + \text{통계청의 연령별 기대여명}_{it}$
- 장수기대:
 - 주관적 기대수명과 객관적 기대수명의 차이
 -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와 인지오류(misperception) 요소가 포함됨
- 개인연금 보유여부:
 - 연금저축+연금보험+IRP 보유 여부

14

성별 장수기대 분포



15

성별/연령대별 주관적 기대수명

	Women 30+		Men 30+	
age	sub. life	Sub.-obj. life	Sub. life	Sub.-obj. life
30-39	86.61	0.01	87.02	6.25
40-49	85.26	-1.64	86.18	4.94
50-59	85.56	-1.82	86.12	3.93
60-69	85.38	-2.68	86.02	2.33
70-79	86.83	-2.43	87.17	1.07
80+	91.06	-1.24	90.64	0.47



Women live on average 10 -11.5 years more without spouse (Garnick, 2016; Lee, 2020)

16

공적연금 보유율 비교

	Single women (N = 2,802)	Married women (N = 9,003)	Single men (N = 2,985)	Married men (N = 12,749)
Public pension	68.7%	70.5%	73.6%	87.5%

Source: 재정패널

17

개인연금 보유율 비교

	Single women (N = 2,802)	Single men (N = 2,985)	Married women (N = 9,003)	Married men (N = 12,749)
Private pension	10.7%	7.6%	14.8%	17.7%

Source: 재정패널

18

Married vs. Single: Job & Employment

	Women (age 30-60)		Men 30-60 (age 30-60)	
%	Single (N = 2,802)	Married (N = 9,003)	Single (N = 2,985)	Married (N = 12,749)
무직	6.4	7.4	7.6	1.9
상용직	48.9	46.4	56.3	62.8
임시직, 일용직	24.8	25.8	19.0	7.7
자영업	19.9	20.4	17.2	27.6
White collar ¹⁾ (자영업 포함)	37.4	35.2	30.9	46.6
White collar (자영업 제외)	35.1	31.3	29.2	40.7
Public sector ²⁾	5.4	5.7	3.4	8.0
Annual individual income ³⁾	2632.82	2369.23	3023.26	5329.08

1)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2) 공적 직역연금이 제공되는 직업(군인, 공무원, 사학, 우체국)

3) In 10,000 KRW

19

개인연금 보유 여부별 기대수명 평균치

	개인연금 보유		개인연금 미보유	
	Women 30-60	Men 30-60	Women 30-60	Men 30-60
객관적 기대수명	87.0	> 81.5	87.1	81.6
주관적 기대수명	85.4	< 86.8	85.7	86.2
장수기대	-1.6	5.3	-1.3	4.7

- 남성과 여성 간 장수기대 차이 존재
- 남성의 경우 개인연금 보유자, 미보유자 간 장수기대 차이 존재

20

랜덤효과 모형 추정치

종속변수: 개인연금보유	여성 30-60		
	전체(N=11,295)	Single(N=2,623)	Married(N=8,672)
주관적 기대수명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장수 기대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남성 30-60		
	전체(N=14,700)	Single(N=2,648)	Married(N=12,052)
주관적 기대수명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장수 기대	0.001 (0.000)	-0.001 (0.001)	0.001* (0.001)

주: 각 모형에 주관적 기대수명과 장수기대 변수가 각각 투입됨; 각 모형에 연령, 교육수준, 근로 상태, 가구소득, 공적연금 보유 여부, 순자산, 자가 보유여부, 기혼 여부, 건강상태, 거주지역, 년도 더미 변수 등을 통제함;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1

추가 분석

- Financial literacy: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금융이해력이 낮다(Lusardi and Mitchell; Agnew et al., 2008)
 - 한국의 경우 성별 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한국은행 2020년도 조사)
 - 추가 투입 결과 남녀 모두 금융이해력이 높은 경우 개인연금 보유 확률 높음
- Risk aversion: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추가 투입결과 기혼 남성의 경우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보유 확률이 낮아짐
 - 위험회피성향 추가 투입에 관계없이 주관적 기대수명은 여전히 양의 상관관계
- Dependence on family:
 - 배우자 소득 의존 및 배우자 연금 의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수와 음의 상관관계

Summary & Discussion

- 기혼 남성의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뚜렷이 나타남:
 - 기혼 남성의 경우 주관적 기대수명, 장수기대가 높을수록 개인연금 보유 확률 높아짐
- 기혼 여성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에 기대수명과 같은 사적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 기혼 여성인 경우 주관적 기대수명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보유 확률 낮아짐
- 결혼 상태에 따라 기대수명과 개인연금 보유 간의 관계가 나타남:
 - 미혼 여성의 개인연금 보유율이 기혼 여성 보다 높음
 - 독신(미혼, 사별, 이혼)인 경우에는 기대수명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배우자의 소득 및 연금 의존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음

Summary & Discussion (계속)

- 기대수명에 대한 남녀 인식 격차는 성별 연금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나라 성별 연금 격차는 다른 나라와 비교 높을 것으로 예상
- 노후준비는 개인의 장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됨:
 - 장수 리스크를 과소 추정하는 경우 미흡한 노후 준비 및 재정부담 증가
 - 기대수명에 대한 인식을 높여 장수 리스크 완화
- 여성의 기대수명 과소추정은 장수 리스크 높임:
 - 성별간 장수기대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뚜렷하지 않음
- 근본적으로 개인연금 선택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연금 상품 정보 제공 강화

사적연금과 지급보증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Waseda University
이 홍 무

2022년8월24일
FP학회/보험연구원 공동세미나



2022/8/26

1

목 차

- 1. 문제의 제기
- 2. 고령화와 사적연금의 필요성
- 3. 사적연금제도
- 4. 기업연금과 지급보증
- 5. 개인연금과 지급보증
- 6. 맺음말

2022/8/26

2

1.문제의 제기

2022/8/26

3

사적연금과 지급보증

- 은퇴 후에 사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기업의 수명
 - 30년설(1983년 닛케이비즈니스)
 - 2021년 도산한 기업의 평균수명은 23.8년(동경상공리서치)
 - 제조업36.3년,금융보험과 정보통신15.7년
- 기업연금
 - 기업의 도산 또는 경영곤란
 - 보험회사나 은행의 도산 또는 경영곤란(간접영향)
- 개인연금
 - 보험회사나 은행의 도산 또는 경영곤란
 - 변액보험

2022/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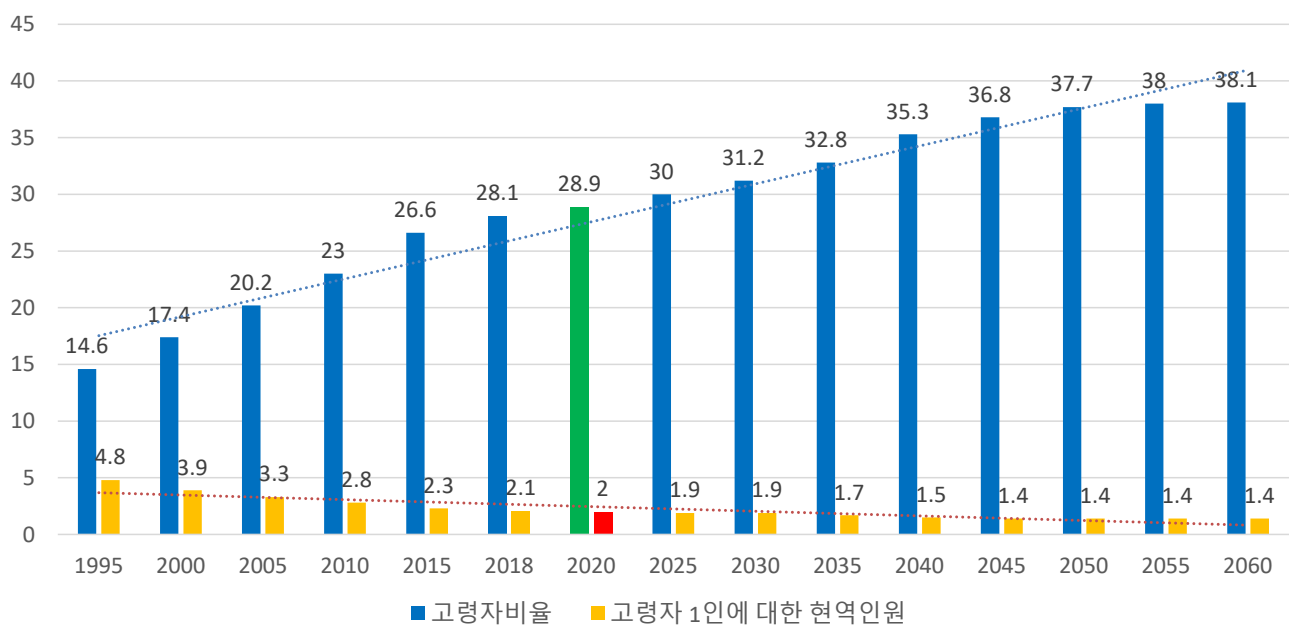
4

2.고령화와 사적연금의 필요성

2022/8/26

5

고령화추세(%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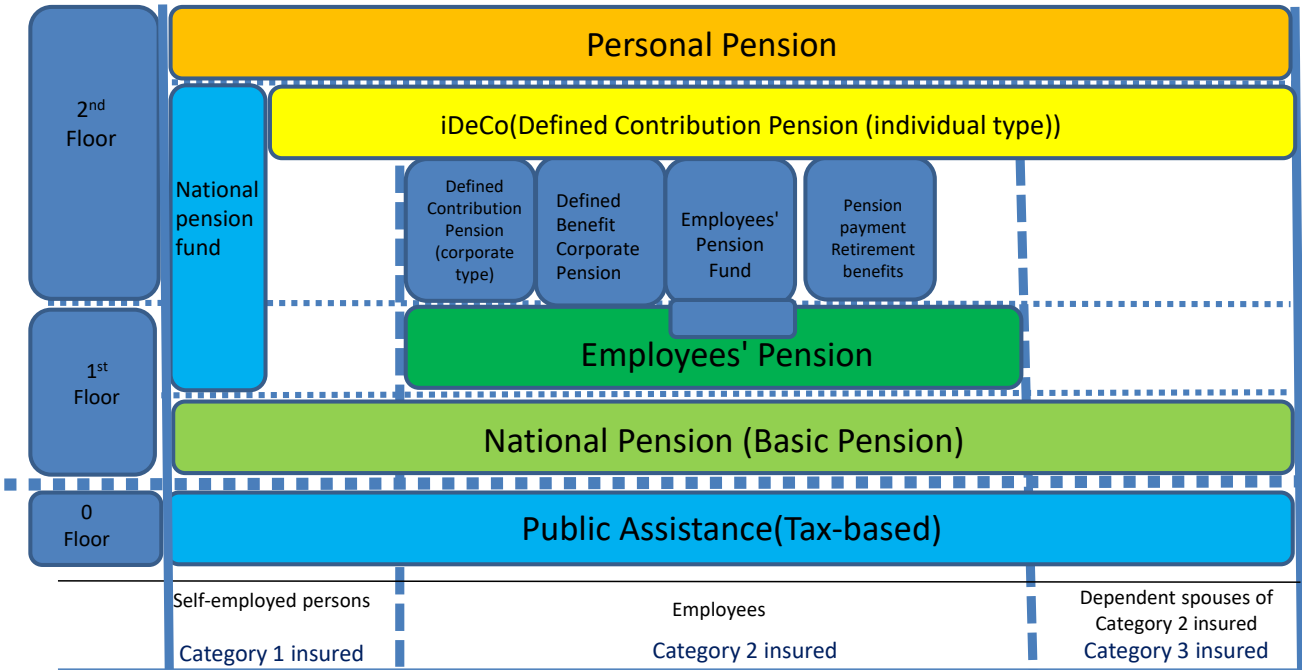


Source: Annual Report on the Aging Society FY 2019, June 2019 Cabinet Office of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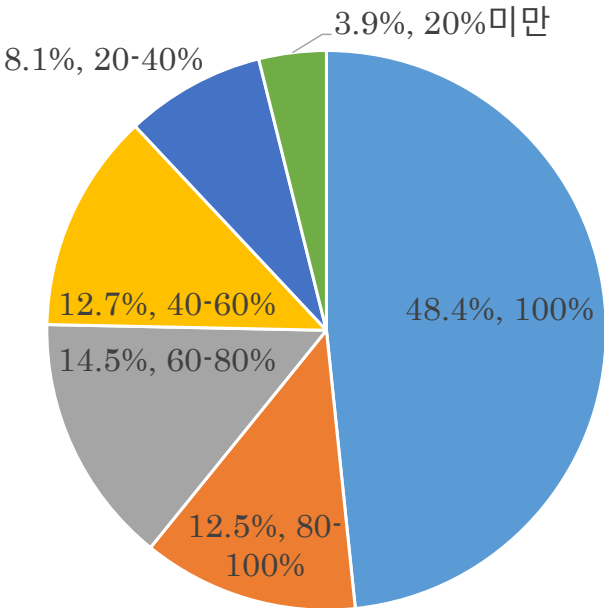
2022/8/26

6

일본의 연금제도



공적연금,은급의 총소득에 차지하는 비율별 세대수의 구성비(2019년조사)



2019년 국민생활기초조사(일본후생노동성)

노후보장에 대한 사적 준비상황

건수 : 4,014 (복수회답, 단위 : %)

구분		연령별					
		18~19세	20세대	30세대	40세대	50세대	60세대
준비하고 있다		8.5	48.5	63.9	67.3	72.6	71.5
(1)	개인연금 보험· 변액개인 연금보험 생명보험	4.9	29.6	45.4	47.4	51.7	44.8
(2)	손보의 연금형상 품	1.2	5.5	8.5	8.2	11.4	9.0
(3)	저축	4.9	31.1	40.2	40.3	50.0	53.9
(4)	유사증권	0.0	3.0	5.7	5.8	9.7	8.6
(5)	기타	0.0	0.5	0.1	1.1	0.8	1.3
준비하고 있지 않다		68.3	42.8	33.6	30.8	26.4	26.9
모른다		23.2	8.7	2.5	1.9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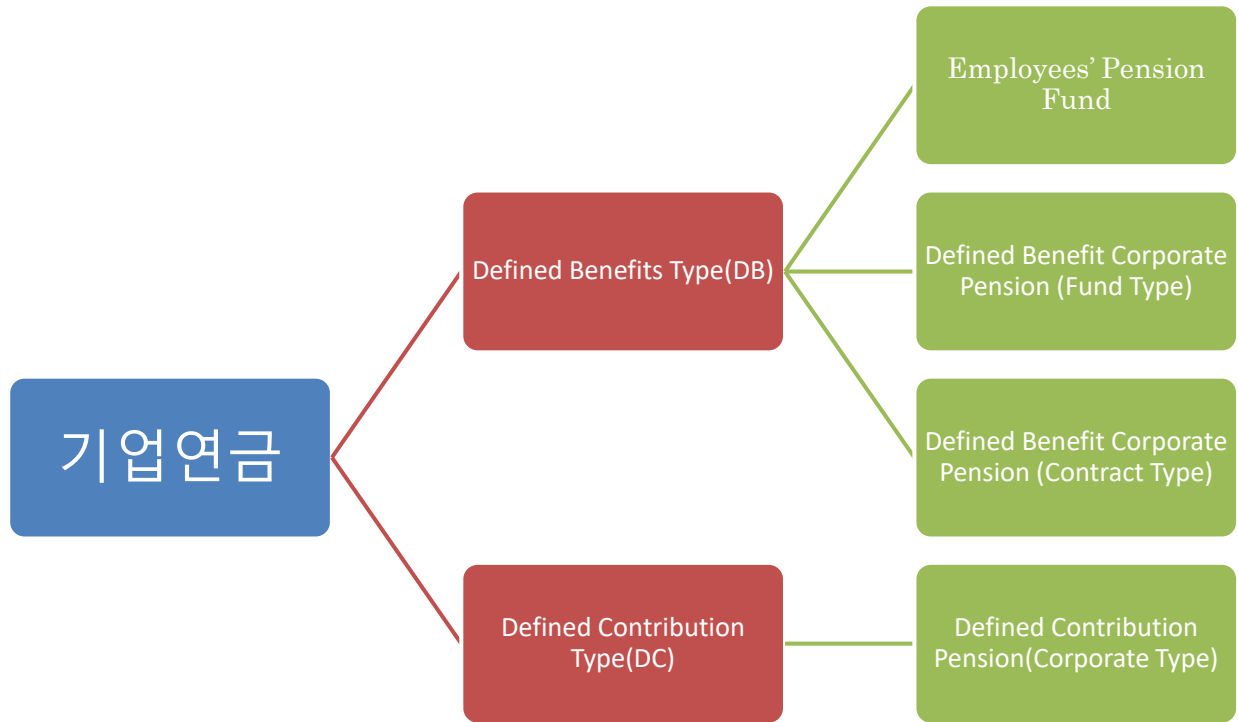
資料 : (公財) 생명보험文化センター「2019年度 生活保障に関する調査」をもとに作成

2022/8/26

9

3. 사적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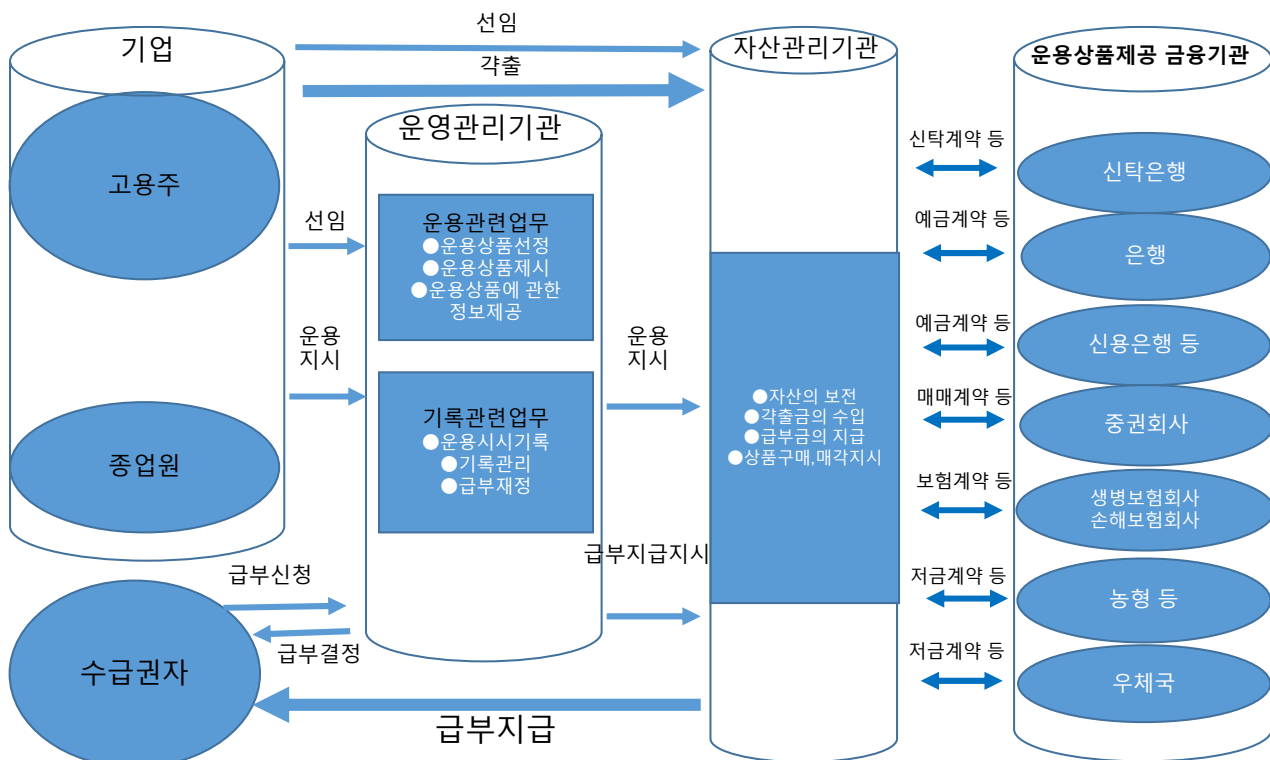
기업연금제도



2022/8/26

11

DC(기업형)



2022/8/2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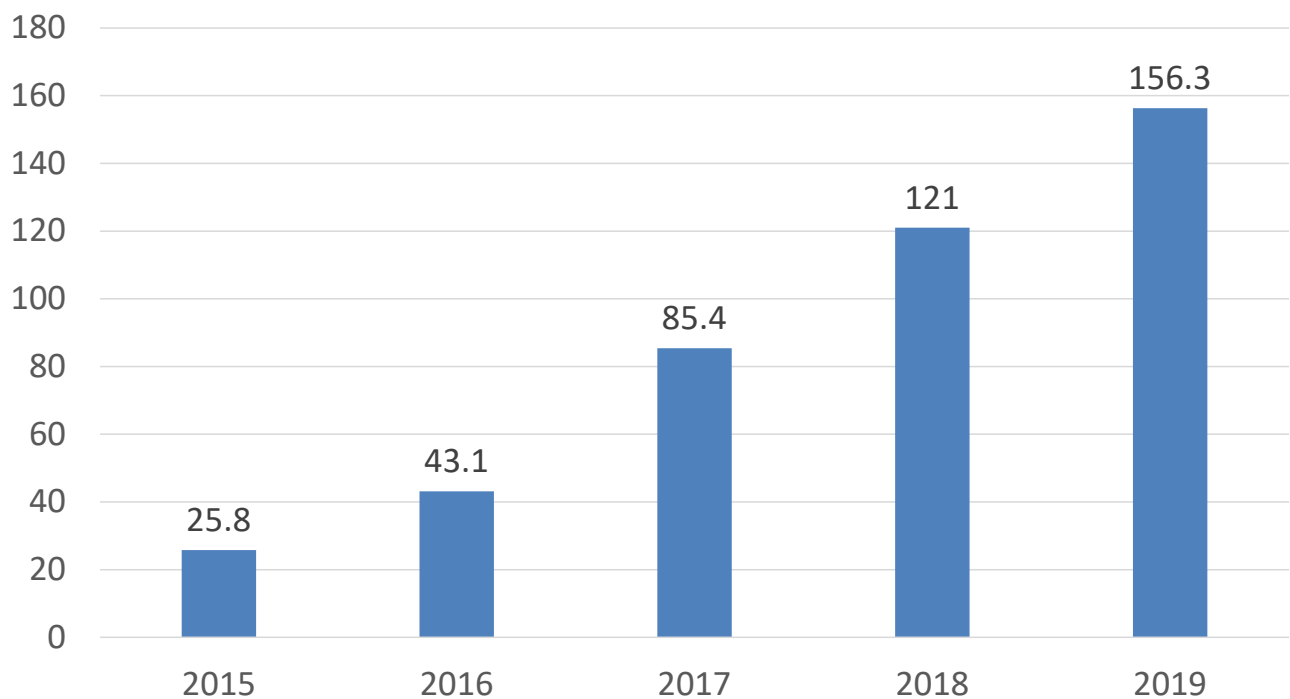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가입인원의 변화(단위: 10,000 명)



2022/8/26

13

iDCO가입인원 (10,000 명)



2022/8/26

14

DB에서 DC로

- 일본의 DC(2001년)는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논의
 - 리스크분담형기업연금(2017년도입된 제3의 기업연금)

구 분	DB	DC
자산형성 리스크	고용주 기업	가입자
초과이익의 귀속	고용주 기업	가입자

- DB
 - 이익과 손실이 고용주기업에 귀속
 - 모랄리스크(투기적운용) 방지 필요
 - 지급보증(적립의무강화)의 필요성
 - 기업경영곤란시 임금인상요구가 있을 경우 임금대신 연금액인상

2022/8/2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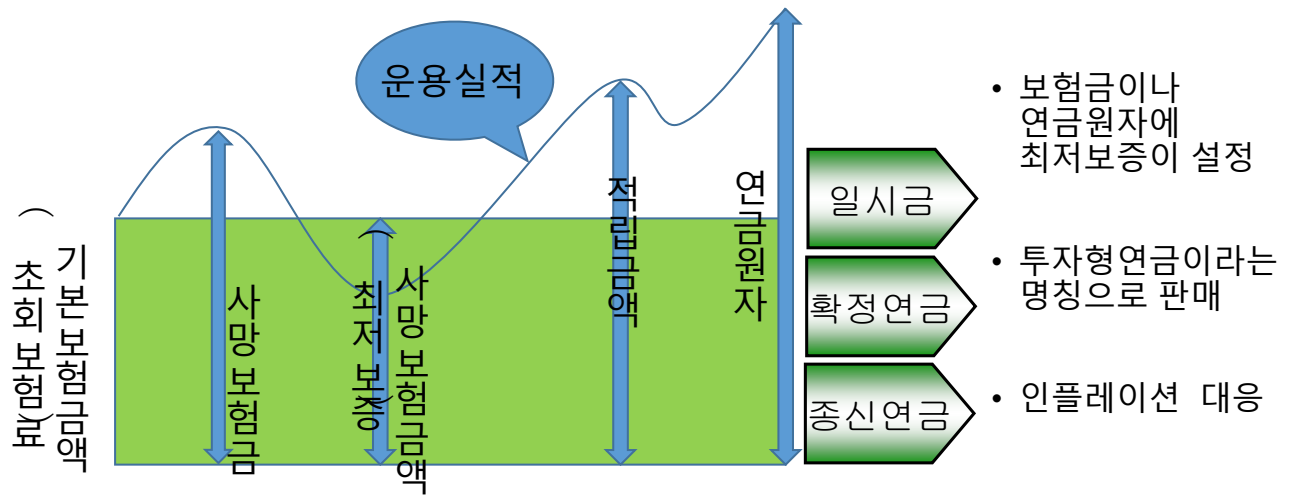
변액연금의 자금흐름



2022/8/26

16

변액연금(일시납입)의 구조



2022/8/26

17

4. 기업연금과 지급보증

2022/8/26

18

기업연금의 지급보증제도

- 지급보증(DB)
 - 기업의 도산 등으로 기업연금제도가 폐지 또는 지급불능이 된 경우, 일정범위에서 연금의 지급을 보증
 - 미국의 「제도종료보험」, 영국의 「연금보증기금」, 캐나다 퀘벡주의 「연금급부보증」이 있다.
- 일본에서는 기업연금연합회가 후생연금기금을 대상으로 「지급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2013년의 후생연금기금의 개정에 관한 법개정시에 폐지됨.

2022/8/26

19

미국 연금급부 보증공사

-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 1963년의 Studebaker의 공장폐쇄 시의 적립부족으로 인한 규제논의
 - 가입자나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 가입자격과 수급권부여, 최저적립기준, 수탁자책임, 제도종료보험
- 연금급부 보증공사(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PGBC)
 - 적립부족의 상태로 고용기업 도산시의 공적보증제도
 - 재원은 고용주로부터 가입자단위로 징수하는 보험료
 - 고용주 리스크를 DB제공자 전체로 공유하는 제도
- 고용주의 모랄리스크
 - Credit에 의한 각출억제
 - 파탄직전의 급부증액
 - 고율의 예정이율 적용
- 2006년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
 - 최저적립기준의 강화(비계속기준에 가까운 기준)
 - 적립부족 각출의무의 강화
 - 적립부족에 따른 급부제한(급여인상대신 연금급부 인상을 방지)

2022/8/26

20

DB의 급부삭감, 몰수

- 일본의 경우 경영곤란시 노동조합이나 수급자의 가입자의 동의를 전제로 급부삭감 가능
 - 확정급부기업연금법시행규칙제6조
- 기업의 명예훼손 등의 경우는 몰수 가능(수급권부여)
 - 취업규칙

5. 개인연금과 지급보증

파산시 소비자 보호: 은행

-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
 - 일본 국내에 본점이 있는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노동금고, 신용금고중앙금고, 전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 노동금고연합회, 상공조합중앙금고이며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 단, 이러한 금융기관에서도 해외지점과 외국은행의 일본지점도 대상에서 제외, 일본국내에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외국금융기관 자회사(외국금융기관의 일본법인)라도 대상
- 보호범위

구분		예금 등의 분류	보호범위
예금보험제도의 대상예금 등	결제용 대금	당좌예금, 이자가 붙지 않는 보통예금 등	전액보호
	일반예금 등	이자가 붙은 보통예금, 이자가 붙지 않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원금보전계약이 있는 금전신탁 등	금융기관마다 예금자 1명당 원금 1,000만엔까지와 파산일까지의 이자 등을 보호
예금보험제도의 대상 외 예금 등		외화예금, 양도성예금, 무기명예금, 가공명의로의 예금, 타인명의로의 예금(차명예금), 금융채(모집적 및 보호예치계약이 종료된 것)	보호대상 외

파산시 소비자 보호: 보험

- 파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구제보험회사에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자보호기금」제도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에 1996년부터 도입
-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구제 보험 회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능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
- 이에 따라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써 1998년 6월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와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1998년 12월 1일에 각각 설립

보상대상과 금액(보험)

- 보험계약의 보상대상계약
 - 특별계정(변액보험)을 제외한 원수보험계약으로 고예정이율계약을 제외
- 보상비율은 파탄시점의 책임준비금의 90%
- 고예정이율계약의 보상율 = $90\% - \{ (\text{과거5년간의 각년도의 예정이율} - \text{기준이율}) \text{의 합계} \div 2 \}$
 - 고예정이율계약
 - 파탄시점의 과거5년간에 항상 예정이율이 기준이율을 초과한 계약
 - 기준이율
 - 생명보험(손해보험) 전사의 과거 5년간 평균수익율을 기준으로 금융청장관 및 재무대신이 정함.
 - 현재는 3%

2022/8/2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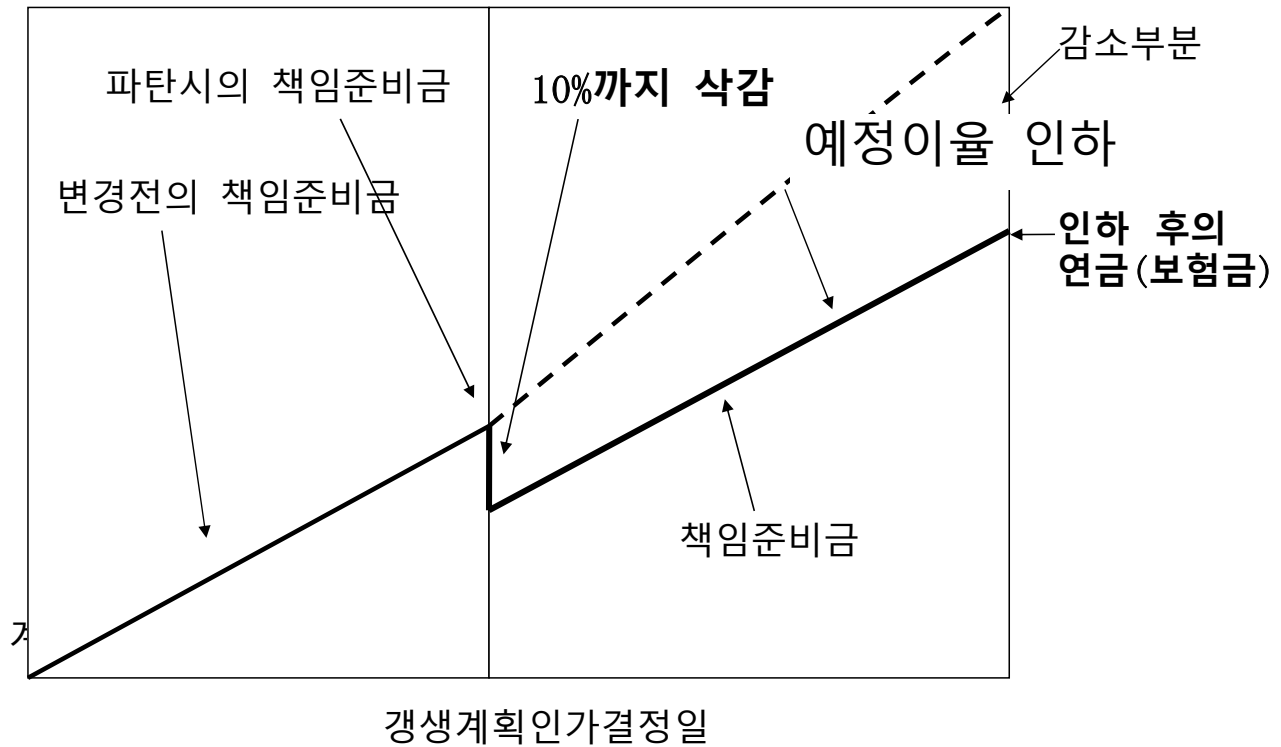
파산시 소비자 보호: 증권

-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일본 투자자 보호기금이 있음
- 일본에서 영업하는 모든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
-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재산과 증권회사 자신의 재산을 분별관리할 의무를 지지만, 증권회사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
-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 상품: 예치금, 유가증권(주식, 투자신탁, MRF, 상장투자신탁, 외국주식 등), 신용거래의 증거금, 옵션거래, 선물거래에서의 증거금
- * 신용거래, 옵션거래 등에 있어서의 미결제건의 평가이익 등은 보호의 대상 제외
- 증권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맡은 금전이나 주식, 채권, 투자신탁 등의 유가증권을 거래처의 증권회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자산과는 확실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화(분별관리)
 - 분별관리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증권회사가 파산시 원칙으로서 이용자의 자산에는 영향이 없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할 수 있음
 - 만일 어떠한 사정으로 증권회사가 파산되어, 분별관리의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이용자의 자산을 원활히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일본 투자자보호기금은 이용자의 금전과 유가증권의 가치(시가)를 합계하여, 1인당 1,000만엔을 상한으로 보상

2022/8/26

26

책임준비금과 예정이율의 인하



27

東邦生命의 보험금·연금액의 삭감율(%)(가입연령20세) (1999년6월 4 일파탄)

구 분	보험계약년도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일시납 양노보험	16	15	14	20	21	21	18	14
일시납종신보험	50	49	65	65	75	80	79	79
종신보험	31	32	46	47	57	62	62	63
정기부종신보험	18	18	20	21	25	23	24	24

6. 맺음말

2022/8/26

29

은퇴 후에 사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기업연금
 - DB
 - 파탄시의 지불보증제도가 없음
 - 감액, 몰수 가능
 - DC
 - 구입상품에 따라 보증한도가 다름
- 개인연금
 - 변액연금
 - 보험금 일부 보증
 - 보험사파탄시 보증대상외
 - 일반계정의 연금
 - 책임준비금의 90%보증
 - 연금액은 예정이율 인하 후 재계산

2022/8/26

30

References

- *Annual Report on the Ageing Society FY 2019*, June 2019 Cabinet Office of Japan.
- Hongmu Lee, "Insurance Bankruptcy and Policyholder Protection", *New Insurance Theory*, Seibundo, 2005.
- Id., "Changes in Resolution of Insurance Companies in Japan", *Life Insurance*, No. 317,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June 25, 2005.
- Id., "Variable Annuity Risk Management in Japan and Its Problems (1)", *Life Insurance*, No. 325,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March 5, 2006.
- Id., "Variable Annuity Risk Management in Japan and Its Problems (2)", *Life Insurance*, No. 327,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May 5, 2006.
- Id., "Protection of Beneficiary Rights in DBs and the Effectiveness", *The Waseda commercial review*, No.409.410, Waseda university, December 2006.
- 李洪茂、確定給付企業年金法におけるモラル・ハザードと受給権保護『保険学雑誌』第603号、日本保険学会、2008年12月31日、pp.87-106。
- 同上、日本における基金型企業年金「厚生年金基金」のモラルリスクと受給権消失『生命保険』第419号、韓国生命保険協会、2014年1月10日、pp.28-39。
- Hongmu Lee, *Personnel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Hakueisha, 2021.
- Id., *Insurance Theory*, Hakueisha, 2021.
- Id., *Risk Management*, Springer, 2021.
- Hongmu Lee, ed., Gianni Nicolini, ed., and Man Cho, e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ension Systems*, Springer, 2022.

자산 기반 연금상품 : 주택자산의 연금화에 대한 국제 비교

2022. 8. 24

이용만

[한성대학교]

1

목차

- I. 서론 – 문제의식
- II. 주택 자산의 현금화
- III. 정책적 함의

- 본 논문은 Kim Yoonsu, Lee Youngman, and Cho Man, "Home Equity Monetizing Scheme: An Inter-Country Survey" in Lee Hongmoo et al. e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ension Systems: An Investigation from Consumers' Viewpoint*, IAFICO (forthcoming)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의 오류는 저자의 것입니다.

2

I. 서론 – 문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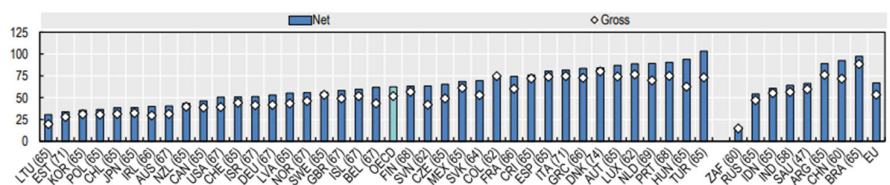
○ 다층 연금 제도

- ✓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 연금 만으로는 노후 생활 보장이 어려워
 - 더 나아가 대부분 나라에서 장수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공적 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
 - 공적 연금 개혁은 연금 수령액 조정, 연금 개시 연령 연장, 연금 보험료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다 보니(OECD, 2021, pp.15-58), 공적 연금에 의한 노후 생활보장을 더욱 어렵게 함.
- ✓ 여러 국제기구에서 다층 연금 제도 구축을 권고(World Bank, 1994; Gillion et al., 2000; OECD, 2013)
 - 그러나 다층 연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적 연금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층 연금 제도>

3rd tier : 사적 연금 (Private voluntary pension)
2nd tier : 공적 연금 (Public mandatory pension)
1st tier : 기초 연금 (Basic pension)

<공적 연금의 소득 대체율>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연금 개시 연령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1, 2021, p.145

3

I. 서론 – 문제 의식

○ 자산기반 복지 시스템(asset-based welfare system)?

- ✓ 젊은 날 자가 거주를 위해 주택 자산을 축적 → 은퇴 후 주택 자산을 처분하여 노후 생활(자가주의 homeownership)을 복지시스템으로 연결하자. Doling and Ronald, 2010)
- ✓ 동아시아 : 가족기반 복지 시스템에서 다층 연금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중
 - (농경사회의 전통) 장남이 부모 부양, 부모는 장남에게 주택 등을 상속 → 산업화, 도시화로 가족 기반 복지 체계는 붕괴
 - 그러나 노령가구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택으로 보유, 다층 연금 시스템은 불완전한 상태
- ✓ 유럽, 오세아니아 등에서도 공적 연금의 후퇴, 불충분한 사적 연금. 그러나 노령가구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택으로 보유
 -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택의 순자산은 증가(젊을 때 장기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한 후, 장기모기지의 원리금을 갚아 나감에 따라 점차 소유주의 주택 지분이 증가)
 - 주택 자산을 이용한 노후 생활(자산기반 복지 시스템)에 대한 관심(Ayuso et al. 2019; Reifner et al. 2009; Ong et al. 2013; Hoekstra et. al. 2018)
 - 제4의 연금 : 자가 노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을 연금화 하자.(Brownfield, 2014)

4

I. 서론 – 문제 의식

<우리나라의 연령별 자산 구성>

	전체 가구		60세 이상 가구	
	금액(만원)	비중	금액(만원)	비중
자산	50,253		48,914	
금융자산	11,319	22.5%	8,716	17.8%
실물자산	38,934	77.5%	40,198	82.2%
주 주거 부동산	22,876	58.8%	22,645	56.3%
기타 부동산	13,832	35.5%	15,817	39.4%
기타 실물자산	2,226	5.7%	1,736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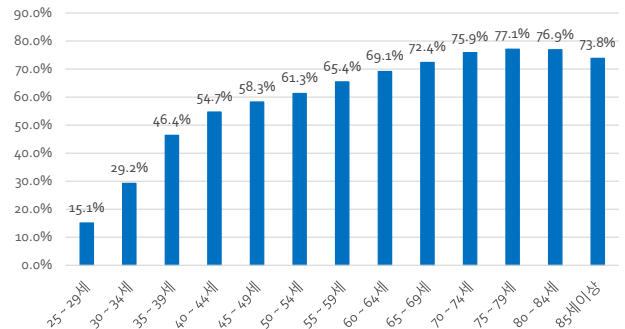
*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EU국가 가구의 자산 구성>

	전체 EU 국가
금융자산	17.8%
실물자산	82.2%
주 주거 부동산	60.2%
기타 부동산	22.3%
기타 실물자산	17.5%

* ECB,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2016 (Ayuso e. al. 2019에서 재인용)

<연령별 자가 점유율(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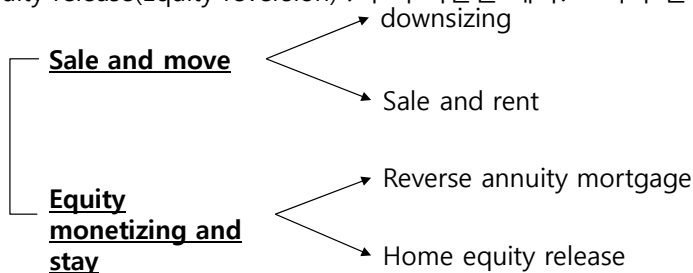
* 인구총조사, 표본 20%, 2020

5

I. 서론 – 문제 의식

○ 어떻게 주택 자산을 현금화 할 것인가?

- ✓ Sale and move: 주택을 매각하고, 이사
 - 다운 사이징(downsizing) : 주택규모를 줄이고, 차액으로 연금상품 매입. 자가 → 자가로 이동
 - 매각 후 임차 : 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임차로 거주. 주택매각액으로 연금상품 매입. 자가 → 임차로 이동
- ✓ Equity monetizing and stay : 주택 지분을 현금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계속 거주(ageing in place)
 - Mortgage : 주택을 담보로 차입(mortgage). 명목상 소유권은 유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 지분은 줄고, 타인 지분(부채)은 증가
 - Equity release(Equity reversion) : 주택 지분을 매각. 그러나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는 계속 거주



6

I. 서론 – 문제 의식

○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ageing in place) 주택자산을 현금화, 현금화 하는 전략에 대해 검토

- ✓ 주택자산의 현금화(Equity monetizing) 구조, 그리고 위험 요인,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두 가지 주택자산 현금화 방안을 검토

<용어의 정의>

- ✓ 일반적으로 주택자산의 현금화를 equity release scheme이라고 부름. 이 중에서 모기지 방식을 mortgage type, loan type 등으로 부르고, 지분매각 방식을 equity reversion type이라고 부름.
- ✓ 그러나 일부에서는 모기지 방식을 equity release mortgage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분매각 방식을 equity release type이라고 부르기도 함.
- ✓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 자산의 현금화를 equity monetizing이라고 부르고, 모기지 방식을 reverse annuity mortgage type으로, 그리고 지분매각 방식을 home equity release type으로 부르기로 함.

7

II. 주택 자산의 현금화

1. 주택 자산 현금화 현황

○ 각국에서 발견되는 주택 자산 현금화 방법(ageing in place 조건 하)

- ✓ 역 모기지(RAM : reverse annuity mortgage) 방법 :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또는 일시불)으로 대출받는 방법
- 정부 보증에 의한 미국의 HECM, 한국의 주택연금, 홍콩의 역모기지,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영국과 호주의 역모기지
- ✓ 지분 매각(HER : home equity release) 방법 : 주택 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연금 상품 구입하는 방법
- 정부 매입의 싱가포르 LBS가 일반적. 역 모기지 상품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음. 영국, 호주, 프랑스 등에서 존재.

Home Equity Monetizing Schemes

Reverse Annuity Mortgage(RAM) type

- With gov't guarantee: HECM(the U.S.)
Home Pension(Korea), RMA(Hong Kong)
- Without gov't guarantee: Lifetime Mortgage(the U.K.)
CHIP Reverse Mortgage(Canada),
Reverse (Equity) Mortgage Product(New Zealand)
Reverse Mortgage(Australia)

Home Equity Release(HER)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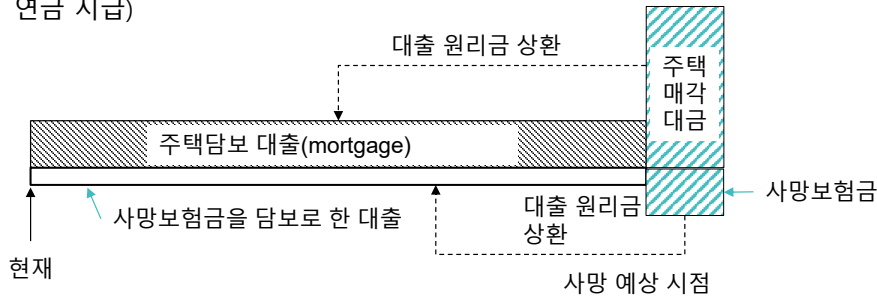
- Gov't purchase: LBS(Singapore)
- Non-gov't purchase: Home Reversion Scheme(Australia),
Viager(France), Home Equity Reversion Product(New Zealand),
Equity Reversion(the U.K.)

8

II. 주택 자산의 현금화

○ RAM Type 사례

- ✓ 미국 HECM : 정부보증 역모기지 상품의 표준(standard). 일시금 대출 용도로 많이 사용
- ✓ 한국 Home Pension : 미국 HECM을 벤치마크로 하여 개발. 일정한 금액을 대출하는 연금식 대출이 일반적임.
- ✓ 홍콩 사례 : 주택담보 RAM + 생명보험금 담보 RAM(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증서를 담보로 추가 연금 지급)



- ✓ 영국 사례 : 민간 보험회사가 RAM 제공. 민간 보험회사는 주택소유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 제공 가능
- ✓ 뉴질랜드 사례 : RAM에서 주택 지분 중 일부가 반드시 남도록 설계하여 대출
연금액(대출액)은 줄어들지만, 피상속인에게 일정한 금액이 반드시 지급(상속 동기를 충족시켜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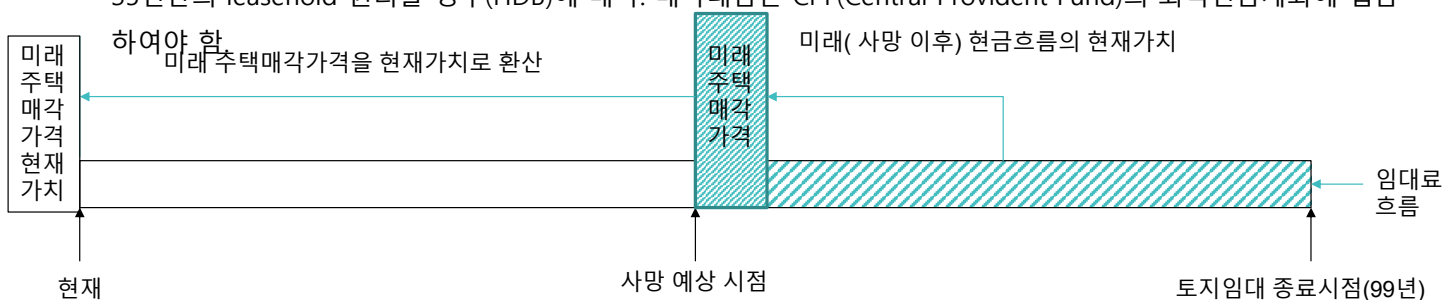
11

II. 주택 자산의 현금화

2) HER Type

○ 싱가포르의 LBS

- ✓ 정부 매입 프로그램 : 정부가 주택시장을 매입해주는 프로그램. 연세 싱가포르의 LBS(Lease Buyback scheme)가 유일
- 싱가포르는 국유지를 99년 임차하여 주택을 짓기 때문에 주택의 유효기간은 토지 임차 후 99년임(leasehold).
- 사망 예상시점에서 남아 있는 leasehold의 가치를 현재가치화하여 정부(HDB)가 leasehold를 매입
- 예) leasehold가 65년 남았고, 현 거주자(leasehold 소유자)가 95세 될 때까지 30년이 남았을 경우, 30년 뒤부터 35년간의 leasehold 권리를 정부(HDB)에 매각. 매각대금은 CPF(Central Provident Fund)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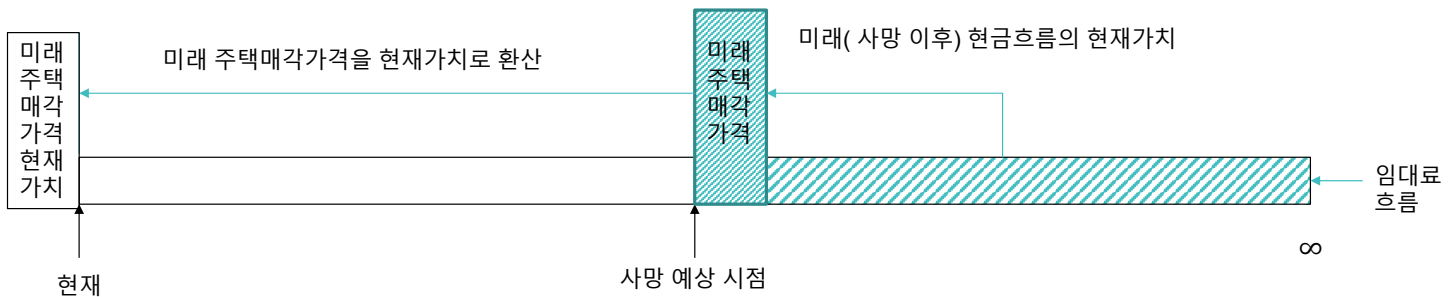


12

II. 주택 자산의 현금화

○ Sale and mortgage

- ✓ Sale and mortgage : 사망 예상 시점의 주택가격(예상 가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매각(모기지 유형과 유사하여 sale and mortgage라고 부름)
 - 사망 전까지 계속 거주
 - 현재 주택가격의 30%-60% 수준(사망예상시점과 할인율에 따라 달라짐)에서 지분 매입
 - 부분 지분 매입도 가능
 - 영국, 호주 등에서 equity reversion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자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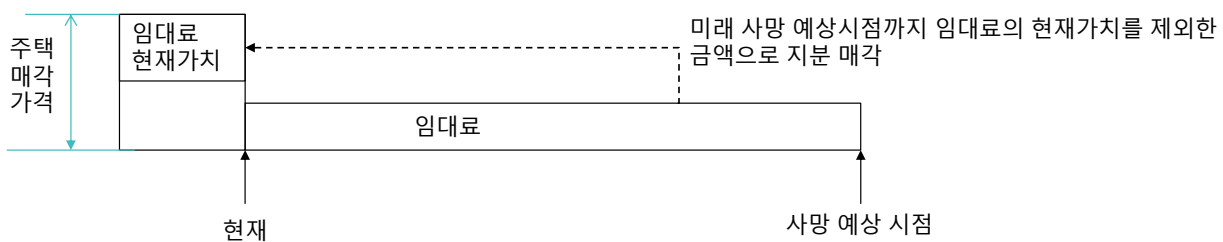


13

II. 주택 자산의 현금화

○ Sale and leaseback 1

- ✓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주택 지분을 매입하되, 사망예상시점까지 임차권을 부여
 - 현재 주택가격에서 임대료 선납 부분의 현재가치만큼 공제하고 매각대금 지급
 - '매각대금-임대료 선납'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개 주택가격의 30%-60% 수준(사망예상시점, 할인율 정도에 따라 다름)
 - 지분의 일부만 매입할 수도 있음.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주택지분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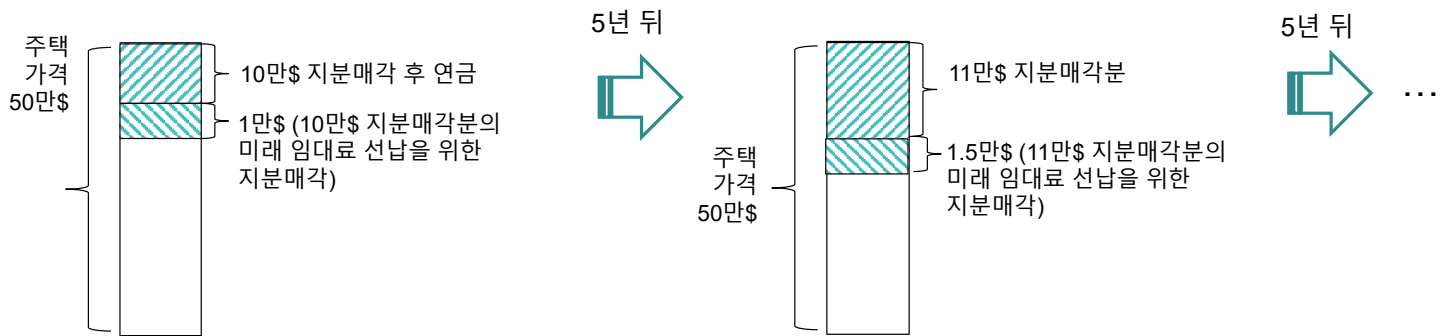


14

II. 주택 자산의 현금화

○ Sale and leaseback 2

- ✓ 주택가격 중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의 현재가치를 선납하기 위해 지분을 일부를 매각. 일정 기간 후 다시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여 임대료 선납
- 호주의 Domacom이라는 투자 플랫폼에서 상품 출시



15

II. 주택 자산의 현금화

3. 주택 자산 현금화 관련 이슈와 위험 구조

1) 주택 자산 현금화 관련 이슈

○ Negative equity 이슈

- ✓ RAM type에서 negative equity 이슈
 - Negative equity clause : 소유주의 지분이 0이 되면, 대출을 중단하고 주택을 매각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 조건 → 고령의 차입자가 거처 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문제 발생.
 - 정부보증 없이 민간이 상품을 파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런 상품 판매를 금지(NNEG : non-negative equity guarantee).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LTV를 제한하고, 생존기간을 최대(예: 99세)로 산정
 - 정부보증 RAM의 경우, 유한책임 대출로 운용. 그 대신 보증금을 받아 유한책임에 따른 손실을 커버(보험 원리)
- ✓ HER type에서 negative equity 이슈
 - 생존기간이 길어질 경우, negative equity 문제가 발생(남아 있는 지분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함).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원 소유주는 고령의 나이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문제가 발생
 - 싱가포르 LBS : 95세까지 생존하는 것을 가정. 그 이상 생존할 경우 별도의 주거지를 HDB가 마련해 줌.
 - 민간 투자에 의해 HER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원 소유자의 퇴거를 금지시킴. 민간 투자자는 생존기간을 길게 설정

16

II. 주택 자산의 현금화

○ 과도한 자본차익 이슈

- ✓ HER type에서 과도한 자본차익 이슈
 - 원 소유주가 조기 사망(또는 조기 이사)하거나 주택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상승할 경우, 주택 투자자가 지나치게 많은 자본차익을 얻는 문제가 발생
 - 일부 상품에서는 원 소유주가 조기 사망(또는 조기 이사)하거나 주택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상승할 경우, 자본차익의 일부를 refund 해주기도 함.

○ moral hazard 이슈

- ✓ HER type에서 소유권이 주택 투자자(자금 제공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이용하는) 원 소유자는 주택을 잘 관리할 동인이 없음.(moral hazard 문제)
 - RAM type에서도 부분적으로 moral hazard가 발생(negative equity가 되면 moral hazard 발생)
 - 주택의 성실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실 관리하였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품이 필요

17

II. 주택 지분의 현금화

○ 법적 안정성 이슈

- ✓ HER type에서 법적 안정성 이슈
 - HER가 Sale and mortgage 방식일 경우, 지분매각 계약 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정 시점 뒤에 소유권을 넘겨 받는 계약을 한 것으로 인식하는 국가도 있음(일종의 선도 계약). → 이 경우, 재산세 납부 주체, 계약해지 가
- ✓ 중도취환위험이 발생
 - RAM에서는 중도해지가 가능 : 원리금을 중도에 상환하고, 중도 해지 가능
 - HER에서는 지분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불가능. HER에 대하여 소비자가 불안하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 단, 특약을 통해 redemption 권리를 원 소유주에게 제공할 수도 있음.

	RAM	HER
주택(지분)매각시점	대출종료 시	지분매각계약 시
주택 소유권자	원 소유자	자금 제공자(원 소유자와 부분 공유 가능)
자금 제공자	대개 금융기관(모기지 대출기관)	대개 주택 투자자
계약의 중도 해지 가능성	가능	불가능

18

II. 주택 자산의 현금화

2) RAM과 HER의 투자 위험 요소

○ 투자 위험 요소

- ✓ RAM : ① 주택가격 하락 위험(예상 외 가격 하락 시 '채무 원리금>주택가격'이 되어 대출자가 손실 부담), ② 장수 위험(예상 외로 장수할 경우, '채무 원리금>주택가격'이 되어 대출자가 손실 부담, ③ 금리 상승 위험(변동금리에서 금리상승으로 '채무 원리금>주택가격'이 되어 대출자가 손실 부담
- ✓ HER : ① 주택가격 하락 위험, ② 장수 위험, ③ 임대료 상승 위험

	RAM	HER
주택가격 하락 위험	원 소유자가 부담. '채무 원리금 > 주택가격'일 경우 대출자가 부담(NNEG 조항이 있을 경우)	자금 제공자가 부담
장수 위험	'채무 원리금 > 주택가격'일 경우 대출자가 부담(NNEG 조항이 있을 경우)	원 소유자가 부담. 그러나 자금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금리 상승 위험	변동금리 : 차입자. 단, '채무 원리금 > 주택가격'일 경우 대출자가 부담(NNEG 조항이 있을 경우)	-
임대료 상승 위험	-	자금 제공자가 부담

* Ayuso et al.(2019), Reifner et al.(2009)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19

II. 주택 자산의 현금화

○ 투자 이익 요소

- ✓ RAM : 주택가격의 예상 외 상승이나 금리의 예상 외 하락 등에 따른 이익은 주로 원 소유자(차입자)가 향유
- ✓ HER : 주택가격의 예상 외 상승, 원 소유자의 조기 사망(또는 조기 이사)에 따른 이익, 임대료 하락에 따른 이익은 주로 자금 제공자가 향유(일부 원 소유자가 향유하기도 함).

	RAM	HER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원 소유자가 향유	자금 제공자(원 소유자와 부분 공유일 경우, 원 소유자도 포함)가 향유
조기 사망(또는 조기 이사)에 따른 이익	-	자금 제공자가 향유(대개의 경우, refund 조항을 가지고 있어 자금 제공자 이익이 제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익	변동금리 : 차입자(원 소유자)	-
임대료 하락에 따른 이익	-	자금제공자가 향유

* Ayuso et al.(2019), Reifner et al.(2009)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20

II. 주택 자산의 현금화

○ 투자위험 요소와 이익

- ✓ RAM은 주택가격 하락 위험, 장수 위험, 금리 상승 위험 등이 있지만, '대출원리금<주택가격' 인 상태에서는 대출자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음. → 대출자는 LTV를 낮게 유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 ✓ HER은 주택가격 하락 위험, 장수 위험, 임대료 상승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그 대신 반대되는 상황(주택가격 상승, 조기 사망, 임대료 하락)에서는 자본이익을 얻게 됨.

<RAM과 HER의 risk factor에 대한 판단>

- ✓ Alai et al.(2014) : RAM은 LTV가 낮게 유지되면 손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자금 공급자가 선호(전 세계적으로 RAM이 일반적인 이유)
- ✓ Hanewald et al.(2016) : 소비자 효용 측면(더 많은 현금화)에서 RAM이 HER보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효용을 제공

21

III. 정책적 함의

○ 주택 자산의 현금화 걸림돌들

- ✓ 수요자 측면 1 : 상속 동기(bequest motive)
 -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EU, 호주, 미국 등에서도 상속 동기가 주택 자산을 현금화 하는데 걸림돌 (이용만 외, 2017; Hoekstra and Dol, 2021; Ayuso et al. 2019)
- ✓ 수요자 측면 2 : 미래의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대비 (Davidoff, 2010)
- ✓ 수요자 측면 3 :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 문제)
 - 여러 나라에서 상품이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 문제가 제시
 - 상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입 (이용만 외, 2017)
- ✓ 공급자 측면 : 너무 큰 위험
 - 주택가격 위험, 장수 위험 등이 크기 때문에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기 어려움.
 -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출액(또는 지분매입액)을 최소화로 대응

22

III. 정책적 함의

○ 정책적 함의 1

- ✓ 다층 연금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 가구의 70%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을 현금화 하는 전략이 필요.
- 주택의 Downsizing : 다운사이징 하고, 그 차액은 연금화(다운 사이징 과정에 인센티브 필요. 거래 비용 최소화)
- 거주 주택의 현금화 : 위험 요소가 다르고, 소비자의 선호가 다르므로 주택지분의 현금화(HER type)도 제도화
- ✓ 상속 동기를 반영한 상품 개발
- RAM의 경우, 상속 동기를 반영하여 대출 종료 시(가입자 사망 시), 피상속인이 대출원리금을 인수하되, 대출원리금을 일반 모기지로 전환시켜주는 방법
- RAM의 경우, 상속 동기를 반영하여 주택 지분 중 일부가 남는 상품 개발(뉴질랜드 사례)
- HER의 경우, 상속 동기를 반영하여 Redemption right을 원 소유자에게 제공(원소유자나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HER의 경우, 상속 동기를 반영하여 지분의 일부를 남겨 두고 지분 거래

23

III. 정책적 함의

○ 정책적 함의 2

- ✓ 주택 외의 자산도 현금화 하는 전략이 필요.
- 사망 시 받는 연금이나 보험금 등을 담보로 추가 연금 지급(홍콩 사례)
- ✓ HER의 경우, Fintech와 연결
- 주택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서, 주택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자의 주택을 HER로 매입(호주의 Domacom 사례)

24

참고문헌

1. 이용만, 방송희, 조만, "주택 상속 동기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 의향", Housing Finance Seminar, 2017
2. Alai, D., H. Chen, D. Cho, K. Hanewald, and M. Sherris, "Developing Equity Release Markets: Risk Analysis for Reverse Mortgages and Home Reversions", presented to the Actuaries Institute Actuaries Summit 2013, Sydney, 2013
3. Al-Umaray, K. and 27 other authors, *Integrating Residential Property with Private Pensions in the EU*, Final Report, IFF, 2018
4. Ayuso, M., J. M. Bravo, and R. Holzmann, "Making use of Home Equity: The Potential of Housing Wealth to Enhance Retirement Security", BBVA institution, Spain, 2019
5. Brownfield, Christine, "The Fourth Pillar – The Role of Home Equity Release in Retirement Funding", presented to the Actuaries Institute Financial Services Forum, Sydney, 2014
6. Davidoff, T., "Home Equity Commitment and Long-Term Care Insurance Demand",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4, pp.44-49, 2010
7. Doling, J. and R. Ronald, "Property-based Welfare and European Home Owners: How Would Housing Perform as a Pensio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Vol.25 No.2, pp.227-241, 2010
8. Gillion, Turner, Bailey, and Latulippe, *Social Security Pensions: Development and Reform*, ILO, 2000

25

참고문헌

9. Hanewald, K., T. Post, and M. Sherris, "Portfolio Choice in Retirement – What is the Optimal Home Equity Release Product?",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83, No.2, pp.421-446, 2016
10. Hoekstra, J. and K. Dol, "Attitudes towards Housing Equity Release Strategies among Older Home Owners: A European Compariso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Vol.36, pp.1347-1366, 2021
11.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 2013
12. OECD, *Pension at a Glance 2021*, 2021
13. Ong, R., M. Haffner, G. Wood, Tl Jefferson, and S. Austen, "Assets, Debt and the Drawdown of Housing Equity by an Ageing Population", Positioning Paper No. 153, AHURI, 2013
14. Reifner, U., S. Clerc-Renaud, E. F. Perez-Carillc, A. Tiffe, and M. Knoblich, *Study on Equity Release Schemes in the EU-Part 1 General Report*, Institut fur Finanzdienstleistungen, 2009
15. World Bank, *Averting the Old Age Crisis*, 1994

26

THANK YOU!